

【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예 산 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 토 보 고 서

【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025. 11.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안	5
다. 세출예산안	6
라. 기금운용계획안	8
마. 2026년도 신규사업 및 2025종료사업	1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1
나. 일반회계	11
(1) 세입예산안	11
(2) 세출예산안	12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
(1) 세출예산안	13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
(1) 세입예산안	14
(2) 세출예산안	15

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
(1) 세출예산안	17
3. 기금운용계획안	18
가. 고용보험기금	18
(1) 수입계획안	18
(2) 지출계획안	19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
(1) 수입계획안	20
(2) 지출계획안	21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2
(1) 수입계획안	22
(2) 지출계획안	23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4
(1) 수입계획안	24
(2) 지출계획안	25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26
(1) 수입계획안	26
(2) 지출계획안	27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8

Ⅱ. 검토의견 29

[기획조정실] 29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29

 < 국제회의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과 지속 가능성 여부 검토 필요 > 30

[고용정책실] 34

(1) 건설근로자고용지원(일반회계, 1060-301) 34

 < 건설기능인력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장려금 및 실습비 수준 조정 필요 > 36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의 예산비목을 일반연구비로 변경할 필요 > ... 41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45

 < 지원인원의 추계 면밀 필요 > 46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 확대 노력 필요 > 49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 54

 < 광역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거버넌스 및 예산운영체계 정비 필요 > 56

(4)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고용보험기금, 1083-357) 61

 < 포상금 집행 실태 점검 등 사업 관리 필요 > 61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65

(1) 사회적기업 지원(일반회계, 1037-311), 사회적기업 육성(지특)(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7-312) 65

 <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재정사업 간 정합성 제고 필요 > 70

< 효율적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	79
<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을 고려할 필요 등 >	83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90
<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93
(3) 청년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97
< 사업의 목적·대상 집중 및 통합 추진계획 구체화 필요 >	98
(4)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일반회계, 1331-300)	103
< 민관 고용평등상담실의 협력 모델 구축 노력 필요 >	104
(5) 중장년층취업지원(일반회계, 1340-300)	108
< 시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성과 및 사업모델에 관한 점검·보완 노력 필요 >	109
(6) 경계선지능청년지원(일반회계, 1343-300)	114
< 효과적인 사업 노하우 축적을 위한 사업방식 개선 필요 등 >	115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121
< 면밀한 수입 추계 필요 >	122
< 적극적인 기금사업 발굴 노력 필요 >	126
 [직업능력정책국]	130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130
< 돌봄서비스 훈련사업 및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훈련인원 취업의 고용형태 등 후속 관리 검토 필요 >	131
< 포상금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	134

[노동 정책 실]	138
(1) 상생협력 확산지원(일반회계, 2031-301)	138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이행률 제고 및 표준모델 확산방안 마련 필요 >	139
(2) 취약노동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143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 사업의 예산규모 적정성 및 사업수요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44
(3)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일반회계, 2031-305)	148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전문강사 양성 예산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	150
(4) 근로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3032-306)	154
< 법개정을 전제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교육비 예산안 편성 >	156
(5)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기금, 1345-350)	159
<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수요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	161
< 기업지원금 예산비목을 기타보전금으로 변경할 필요 >	166
(6)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	169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171
(7)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176
<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에 앞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최우선변제권 초과 범위에 대한 변제금 회수방안 마련 필요 >	178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절감소요 감액 필요 >	182
(8)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188
< 2025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한 이차보전금 계획안 감액 조정 필요 >	191

[산업안전보건본부]	195
(1)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195
< 스마트 장비(드론) 도입·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필요 >	197
(2)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3-351)202	
<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법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안 편성 및 과다계상된 수입료 조정 필요 >	203
(3)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7-350)	208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10	
(4)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214	
< 안전동행지원사업의 자본보조적 특성과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사업 추진 효과성 여부 등의 관점에서 현 지원 방식의 재검토 필요 >	215
(5) 업종별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222
< 정책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 요건 및 위촉 운영제도 재검토 및 보완 필요 >	223
< 기업 안전보건공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공시 대상에 공공기관 포함 여부 검토 필요 >	234
< 기존 사업의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공모사업 이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설정 고려, 사업이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엄격한 사후 평가 필요 >	238
(6)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5-350)	245

<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는 국제협력사업 지양 필요 >	246
(7) 산재예방시설건립(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1)	249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계획액 감액 필요 >	250
< 지역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 안전체험교육장 재건축 계획액 증액 필요 >	256
< 용역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필요 >	260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압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안 개요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총괄 현황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고보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장애인 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근복지금)이 있음.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¹⁾은 37조 6,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하였음.

예산지출은 6조 6,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81억원(15.3%) 증가하였고, 기금지출은 30조 9,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24억원(4.7%)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7,522억원(14.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59억(20.7%)이 증가하였음.

1) 기금전출금 및 기금여유자금(적립금) 등을 제외한 지출을 말함.

기금지출은 전년 대비 고보기금에서 6,723억원(3.8%), 산재기금에서 4,330억원(4.3%), 장애인기금에서 669억원(7.1%), 임채기금에서 2,195억원(34.9%), 근로복지기금에서 7억원(0.3%) 증가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회계·기금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a+b)	353,452	376,157	22,705	6.4
- 예산지출(a)	57,549	66,330	8,781	15.3
· 일반회계	51,469	58,991	7,522	14.6
· 특별회계	6,080	7,339	1,259	20.7
- 기금지출(b)	295,903	309,827	13,924	4.7
· 고용보험	178,066	184,789	6,723	3.8
· 산재보험	100,176	104,506	4,330	4.3
· 장애인	9,372	10,041	669	7.1
· 임금채권	6,285	8,481	2,195	34.9
· 근로복지	2,004	2,011	7	0.3
■ 총 계	611,032	597,262	13,770	△2.3

*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예산 2025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 5억 7,700만원과 2026년 예산안 총지출 금액 129억원 5,100만원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고보기금으로 6,000억원, 산재기금으로 313억원, 임채기금으로 0.82억원을 전출함.

고보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2조원을 예탁 및 1,394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고, 7,500백억원의 예수금 및 300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음.

산재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5조 500억원을 예탁하고, 4조 8,500억원의 예탁원금 및 1,484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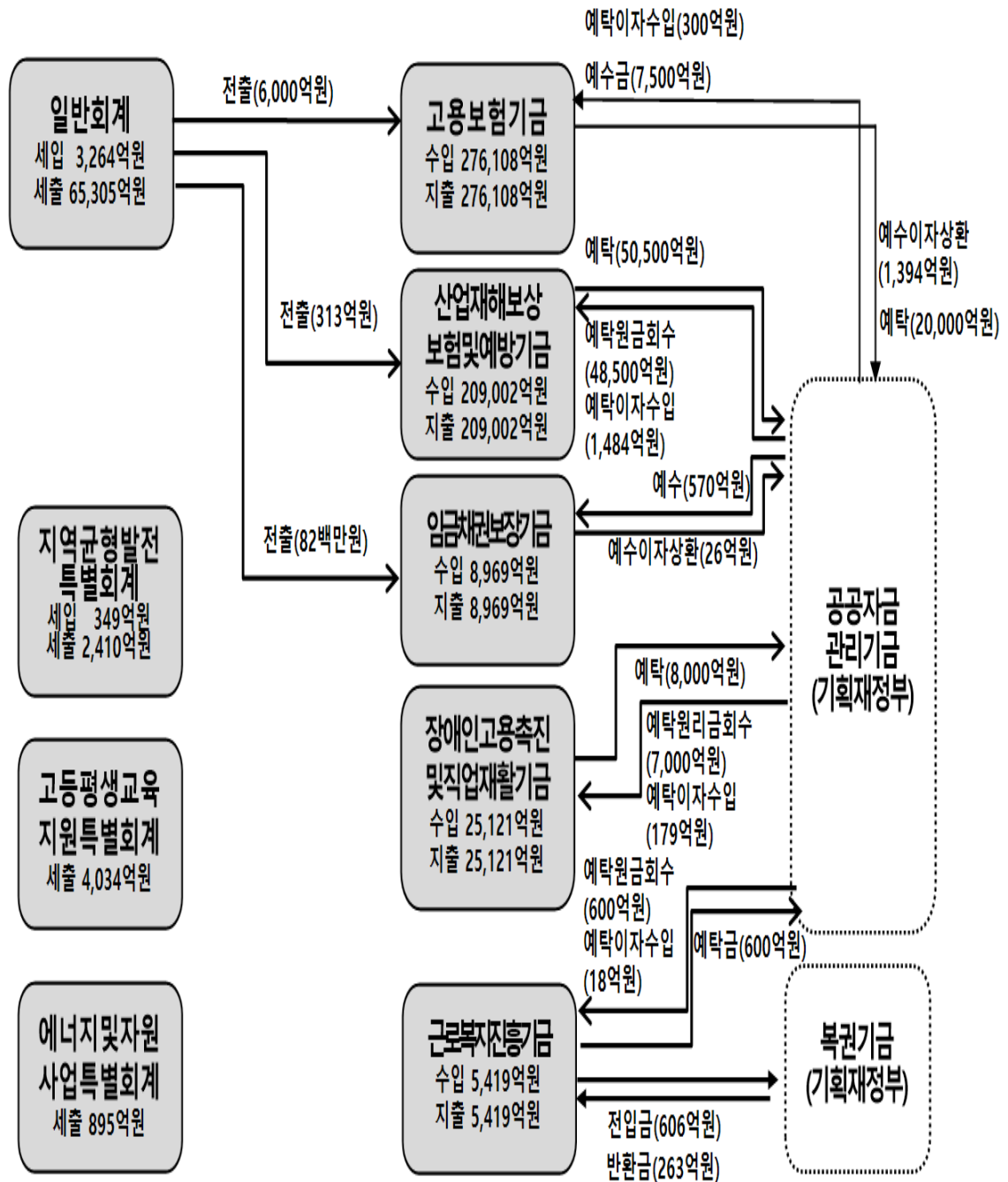
장애인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8,000억원을 예탁하고, 7,000억원의 예탁원금 및 179억원의 예탁이자를 상환받음.

임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이자 26억원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으로 570억원을 예수금을 예수받음

근복지금의 경우 공자기금으로 600억원을 예탁하고 600억원의 예탁원금 및 18억원의 예탁이자수입 원리금을 상환받음. 복권기금으로는 263억원을 전출하고, 606억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나타남.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총계 기준)

나. 세입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61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900만원(4.0%)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6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800만원(0.3%) 증가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48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6,100만원(59.9%) 증가하였음.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347,219	361,328	14,109	4.0
일 반 회 계	325,397	326,445	1,048	0.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822	34,883	13,061	59.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다. 세출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7조 2,643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80억 8,100만원(14.8%) 증가하였음.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별	2025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예산 총계	6,326,306	7,264,387	938,081	14.8
(총지출)	5,754,924	6,633,005	878,081	15.3
◦ 일반회계 총계	5,718,293	6,530,503	812,210	14.2
(총지출)	5,146,911	5,899,121	752,210	14.6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86,620	89,495	2,875	3.3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2,902	240,986	118,084	96.1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98,491	403,403	4,912	1.2

* 3개 특별회계는 기금전출금이 없으므로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함

**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예산 2025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 5억 7,700만원과 2026년 예산안 총지출 금액 129억원 5,100만원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임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계는 6조 5,305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22억 1,000만원(14.2%)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총지출은 5조 8,991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22억 1,000만원(14.6%) 증가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은 89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7,500만원(3.3%) 증가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40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0억 8,400만원(96.1%) 증가하였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4,03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1,200만원(1.2%) 증가하였음.

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52조 4,61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151억 600만원(△4.2%) 감소하였음.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기 금	2025년 계 획(A)	2026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률
계	54,776,908	52,461,802	△ 2,315,106	△ 4.2
고보기금	27,695,504	27,610,808	△ 84,696	△ 0.3
산재기금	23,418,118	20,900,173	△ 2,517,945	△ 10.8
장고기금	2,182,936	2,512,054	329,118	15.1
임채기금	914,227	896,862	△ 17,365	△ 1.9
근복지금	566,123	541,905	△ 24,218	△ 4.3

기금별 지출계획안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27조 6,10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6억 9,600만원(△0.3%) 감소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20조 9,001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179억 4,500만원(△10.8%) 감소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2조 5,12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91억 1,800만원(15.1%) 증가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8,96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6,500만원 (△1.9%) 감소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5,419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 1,800만원 (△4.3%) 감소하였음.

【 참고 】 고용부 소관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총 88억원으로, 2025년도 계획 대비 △25억원(△22.0%) 감소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지출계획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계획		2026 계획안 (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 합계	11,219	11,219	8,753	△2,466	△22.0
·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	6,727	6,727	6,696	△31	△0.5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3,742	3,342	2,057	△1,685	△45.0
·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750	1,150	-	순감	순감

* 2025년도 내역사업인 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와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를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로 통합

마. 2026년도 신규사업 및 2025년도 종료 사업

2026년도에는 건설근로자 고용지원(14억 8,000만원), 경계선지능청년 지원(2억 6,000만원), 안전한일터신고포상금(111억 4,200만원) 등 8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운영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임.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신규사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 일반회계	1,740
◦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1,480
◦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260
□ 고용보험기금	2,00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000,00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9,625
◦ 사회적기업육성(지특회계)	32,100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	60,025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	6,000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	1,50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2,696
◦ 미래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연구개발(R&D)	1,554
◦ 안전한일터신고포상금	11,142
총 계(총지출)	2,114,060(114,061)

[2025년도 종료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료사업	
사업명	2025년 예산
□ 고용보험기금	1,384,162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운영	5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384,157
총 계(총지출)	1,384,162(5)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64억 4,500만원
으로 전년 대비 10억 4,800만원(0.3%) 증가하였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내역별	2025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325,397	326,445	1,048	0.3
○기타재산수입 및 이자수입	3,366	5,192	1,826	54.2
○과태료	50,243	49,255	△988	△2.0
○징계부과금	170	170	-	-
○과징금	3,600	3,803	203	5.6
○위약금 및 가산금	274	281	7	2.6
○기타경상이전수입	267,594	267,594	-	-
○면허료 및 수수료	11	11	-	-
○기타잡수입	139	139	-	-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조 5,305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22억 1,000만원(14.2%)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은 전년 대비 고용창출에서 1,881억 700만원(12.0%), 직업능력개발에서 662억 1,000만원(7.2%), 고용안전망확충에서 2,277억 4,100만원(12.9%), 고용평등증진에서 183억 3,800만원(40.1%), 노사정책에서 103억 1,600만원(9.9%),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436억 6,200만원(69.2%), 산업재해예방에서 535억 3,400만원(1,362.2%),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1,414억 6,800만원(22.0%),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에서 28억 3,400만원(10.2%),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에서 600억원(10.5%)이 증가하였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5,718,293	6,530,503	812,210	14.2
□ 고용창출	1,571,734	1,759,841	188,107	12.0
□ 직업능력개발	921,364	987,574	66,210	7.2
□ 고용안전망확충	1,764,862	1,992,603	227,741	12.9
□ 고용평등증진	45,748	64,086	18,338	40.1
□ 노사정책	104,609	114,925	10,316	9.9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3,075	106,737	43,662	69.2
□ 산업재해예방	3,930	57,464	53,534	1,362.2
□ 고용노동행정지원	643,752	785,220	141,468	22.0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27,837	30,671	2,834	10.2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571,382	631,382	60,000	10.5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9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7,500만원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예산 대비 진폐위로금에서 31억 2,600만원(3.7%) 증가하였고, 진폐건강진단에서 1억 5,100만원(△8.5%), 진폐근로자지원에서 1억원(△8.9%) 감소하였음.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진폐근로자보호	86,620	89,495	2,875	3.3
○ 진폐위로금	83,725	86,851	3,126	3.7
○ 진폐건강진단	1,776	1,625	△151	△8.5
○ 진폐근로자지원	1,119	1,019	△100	△8.9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48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6,100만원 증가하였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 기타재산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851	1,303	452	53.1
○ 과징금 (지역지원계정)	30	56	26	86.7
○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18,412	30,869	12,457	67.7
○ 기타재산이자수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4	23	△1	△4.2
○ 기타경상이전수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505	2,632	127	5.1
계	21,822	34,883	13,061	59.9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40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0억 8,400만원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자율계정)에서 600억 2,500만원(순증), 사회적기업육성(지역자원계정)에서 321억원(순증),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60억원(순증), 국민취업지원제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10억 4,700만원(11.8%), 제주노동위원회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3,700만원(2.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특별자치도계정)에서 15억원(순증) 증액하였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122,902	240,986	118,084	96.1
□ 지역자율계정	-	60,025	60,025	순증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	-	60,025	60,025	순증
□ 지역지원계정	107,864	157,208	49,344	45.7
○ 사회적기업육성(지특)	-	-	32,100	순증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7,864	125,108	17,244	16.0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038	22,253	7,215	48.0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	-	6,000	6,000	순증

○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010	1,016	6	0.6
○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106	109	3	2.8
○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8,910	9,957	1,047	11.8
○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414	1,451	37	2.6
○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3,598	3,720	122	3.4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	-	1,500	순증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	-	-	1,500	순증

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3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1,200만원(1.2%)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예산 대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에서 73억 4,500만원(2.4%) 증가하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에서 34억 4,000만원(△7.6%) 감소하였음.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98,491	403,403	4,912	1.2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307,605	314,950	7,345	2.4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41,809	42,849	1,040	2.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45,406	41,966	△3,440	△7.6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671	3,638	△33	△0.9

3.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보험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은 27조 6,108억 8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846억 9,600만원(△0.3%) 감소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회수(4조 3,905억 2,600만원)와 정부내부수입(1조 3,800억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21조 8,402억 8,2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5,334억 6,600만원(2.5%) 증가하였음.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자체수입	21,306,816	21,840,282	533,466	2.5
사회보장기여금	20,607,249	21,265,796	658,547	3.2
재산수입	360,446	253,107	△107,339	△29.8
융자금회수	104,294	104,294	-	-
기타	234,827	217,085	△17,742	△7.6
○ 정부내부수입	550,000	1,380,000	830,000	150.9
일반회계전입금	550,000	600,000	50,000	9.1
기금예수금	-	750,000	750,000	순증
기금예탁이자	-	30,000	30,000	순증
○ 여유자금회수	5,838,688	4,390,526	△1,448,162	△24.8
합 계	27,695,504	27,610,808	△84,696	△0.3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은 27조 6,108억 8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846억 9,600만원($\Delta 0.3\%$) 감소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6조 9,925억 1,300만원)과 기금간거래(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2조원, 예수이자 1,394억 4,400만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18조 4,788억 5,1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6,723억 100만원(3.8%)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고용창출에서 188억 1,600만원($\Delta 8.3\%$), 직업능력개발에서 846억 1,400억원($\Delta 6.1\%$)감소하였으며, 고용안전망확충에서 6,832억 3,400만원(5.9%), 고용평등증진에서 917억 8백만원(2.0%),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7억 8,900만원(0.7%)이 증가하였음.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증감률
○ 고용창출	225,884	207,068	$\Delta 18,816$	$\Delta 8.3$
○ 직업능력개발	1,392,202	1,307,588	$\Delta 84,614$	$\Delta 6.1$
○ 고용안전망확충	11,492,722	12,175,956	683,234	5.9
○ 고용평등증진	4,577,951	4,669,659	91,708	2.0
○ 고용노동행정지원	117,791	118,580	789	0.7
○ 기금간거래	1,504,789	2,139,444	634,655	42.2
○ 여유자금운용	8,384,165	6,992,513	$\Delta 1,391,652$	$\Delta 16.6$
합 계	27,695,504	27,610,808	$\Delta 84,696$	$\Delta 0.3$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계획안은 20조 9,001억 7,3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조 5,179억 4,500만원(△10.8%) 감소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회수(4조 3,641억 ,8,500만원)와 정부내부수입(5조 297억 3,900만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11조 5,062억 4,9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3,204억 5,200만원(2.9%) 증가하였음.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사회보장기여금(분담금)	9,834,968	10,106,235	271,267	2.8
○ 재산수입	988,677	998,974	10,297	1.0
○ 경상이전수입	123,154	117,621	△5,533	△4.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278	13,351	73	0.5
○ 용자금회수	225,720	270,068	44,348	19.6
○ 여유자금회수	7,148,672	4,364,185	△2,784,487	△39.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083,649	5,029,739	△53,910	△1.1
합 계	23,418,118	20,900,173	△2,517,945	△10.8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계획안은 20조 9,001억 7,3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조 5,179억 4,500만원(△10.8%) 감소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5조 3,996억 1,200만원)과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탁 5조 500억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10조 4,505억 6,1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4,329억 7,000만원(4.3%)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산재보험에서 1,988억 3,800만원(2.4%), 산재예방에서 2,127억 4,800만원(16.5%)이 증가하였음.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산재보험	8,276,355	8,475,193	198,838	2.4
○ 산재예방	1,293,156	1,505,904	212,748	16.5
○ 고용노동행정지원	448,080	469,464	21,384	4.8
○ 기금간거래(예탁금)	4,850,000	5,050,000	200,000	4.1
○ 여유자금운용	8,550,527	5,399,612	△3,150,915	△36.9
합 계	23,418,118	20,900,173	△2,517,945	△10.8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5,120억 5,4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3,291억 1,800만원(15.1%) 증가하였음.

이 중 정부내부수입(7,179억 2,900만원)과 여유자금회수(6,990억 5,500만원)를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1조 950억 7,0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1,316억 600만원(13.7%) 증가하였음.

[2026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자체수입	963,464	1,095,070	131,606	13.7
재산수입	23,032	53,733	30,701	133.3
경상이전수입	933,855	1,033,834	99,979	10.7
용자원금회수	6,577	7,503	926	14.1
○ 정부내부수입	719,366	717,929	△1,437	△0.2
공자기금예탁	700,000	700,000	-	-
공자기금이자	19,366	17,929	△1,437	△7.4
○ 여유자금회수	500,106	699,055	198,949	39.8
합 계	2,182,936	2,512,054	329,118	15.1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5,120억 5,4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3,291억 1,800만원(15.1%) 증가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7,079억 1,900만원)과 기금간거래(공자기금예탁 8,000억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1조 41억 3,5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669억 3,900만원(7.1%)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장애인고용증진에서 638억 2,200만원(7.5%)이 증가하였음.

[2026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 (A)	2026년도 계 획 안(B)	증 감 (B-A)	증 감 륜
○ 장애인고용증진	851,250	915,072	63,822	7.5
○ 고용노동행정지원	85,946	89,063	3,117	3.6
○ 기금간거래(예탁금)	700,000	800,000	100,000	14.3
○ 여유자금운용	545,740	707,919	162,179	29.7
합 계	2,182,936	2,512,054	329,118	15.1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은 8,968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173억 6,500만원(△1.9%) 감소하였음.

이 중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회수 1,828억 8,000만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7,139억 8,200만원으로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117억 4,900만원(△1.6%) 감소하였음.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자체수입	725,731	713,982	△11,749	△1.6
재산수입	22,342	28,492	6,150	27.5
경상이전수입	629,630	611,731	△17,899	△2.8
융자금회수	73,759	73,759	-	-
○ 정부내부수입	107,554	57,082	△50,472	△46.9
일반회계전입금	82	82	-	-
공자금회수	50,000	-	△50,000	순감
공자이자회수	472	-	△472	순감
기금예수금	57,000	57,000	-	-
○ 여유자금회수	80,942	125,798	44,856	55.4
합 계	914,227	896,862	△17,365	△1.9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은 8,968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173억 6,500만원(△1.9%) 감소하였음.

이 중 여유자금운용(462억 4,700만원)과 기금간거래(25억 6,500만원)를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8,480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195억 5,300만원(34.9%)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2,176억 2,300만원(35.6%),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19억 3,000만원(1.4%)이 증가하였음.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율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611,548	829,171	217,623	35.6
○ 고용노동행정지원	16,949	18,879	1,930	11.4
○ 기금간거래	969	2,565	1,596	164.7
○ 여유자금운용	284,761	46,247	△238,514	△83.8
합 계	914,227	896,862	△17,365	△1.9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5,419억 5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42억 1,800만원(△4.3%) 감소하였음.

이 중 정부내부수입 및 여유자금회수 3,601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수입계획안은 1,817억 3,600만원으로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274억 3,000만원(△13.1%) 감소하였음.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재산수입	9,146	9,754	608	6.6
○ 경상이전수입	12,223	8,372	△3,851	△31.5
○ 채화및용역판매수입	13,072	12,794	△278	△2.1
○ 용자금회수	174,725	150,816	△23,909	△13.7
○ 여유자금회수	212,177	197,569	△14,608	△6.9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4,780	162,600	17,820	12.3
합 계	566,123	541,905	△24,218	△4.3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5,419억 500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42억 1,800만원(△4.3%) 감소하였음.

이 중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여유자금운용 3,408억 1,000만원을 제외한 지출계획안은 2,010억 9,500만원으로 25년 당초 계획 대비 6억 6,400만원(0.3%) 증가하였음.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당초 계획 대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9억 5,600만원(0.5%)이 증가하였고, 고용노동행정지원에서 2억 9,200만원(△1.8%)이 감소하였음.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83,934	184,890	956	0.5
○ 고용노동행정지원	16,497	16,205	△292	△1.8
○ 기금간거래(전출금)	23,448	26,255	2,807	12.0
○ 기금간거래(예탁금)	60,000	60,000	-	-
○ 계정간거래(전출금)	31,215	40,172	8,957	28.7
○ 여유자금운용	251,029	214,383	△36,646	△14.6
합 계	566,123	541,905	△24,218	△4.3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1,1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0억원 순증하여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구 분	2025년(A)	2026년(B)	증 감(B-A)
한도액안	995억원	1,165억원	170억원 (순증)
내역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한국폴리텍대학 수도권(459) 충청권(358) 경상권(349)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설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에서 시설을 약정기간(일반적으로 20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원리금 상환의 성격인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함.

2026년도 한도액안은 폴리텍 대학의 수도권(성남·반도체융합캠퍼스), 충청권(충남캠퍼스), 경상권(진주·로봇캠퍼스)의 기숙사, 공학관, 복합관 등 시설 건설을 위한 BTL사업의 한도액임.

II. 검토의견

[기획조정실]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2004년 ~, 직접·해외이전·출연)은 ①OECD와의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한-OECD 공동연구사업), ②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의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노사관계 법·제도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자료를 작성하며(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③FTA 협상전략을 구축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FTA 협정(노동 장)에 명시된 노동 chapter 이행기구를 운영하고 당사국 간 노동 분야 협력사업 수행하며(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④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29억 8,900만원) 대비 17억 7,400만원(59.4%) 감액된 12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예산에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국제장애고용포럼 개최를 위하여 별도로 19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점에 기인함.

[2026년도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699	2,989	2,489	1,215	△1,774	△59.4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강화	231	2,386	2,166	758	△1,628	△68.2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469	603	323	457	△146	△24.2

< 국제회의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과 지속 가능성 여부 검토 필요 >

APEC 관련 회의 개최 예산 대신 2026년도 예산안에는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의 편성 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APEC 의장 수임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아·태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 글로벌 의제 설정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개최된 제7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포럼을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해당 포럼은 당해 APEC 의장국이 마땅히 수임하는 APEC 산하 장관회의 등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 회원국이 돌아가며 주최하는

APEC 산하 장관회의와 달리 매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자체 사무국이 되어 주최하는 회의임. 따라서 2026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재정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5년 10월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총액 3억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APEC 회원 경제체 정부의 고용노동 부처 국·과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2025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주제와 연계된 AI·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제로 토론 등의 본행사와 교육·전시·행사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시, 장소, 개발도상국 참석 인사 지원범위 등의 예산사항 등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²⁾

따라서 해당 포럼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포럼 개최 추진의 필요성 여부와 예산의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APEC 정식 산하 포럼의 부속기관으로서(Subsidiary Bodies of APEC Sub-fora) 고위관리회의의 핵심위원회인 경제기술협력위원회(SOM³⁾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에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을 두고 노동사회보장네트워크(Labour and Social Protection Network)가 활동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인 고용노동부가 같은

2) 고용노동부는 현재 APEC 사무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3) Senior Official's Meeting

분야의 별개 회의를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 향상에 어떠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함.

둘째, 올해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 21개의 회원경제체 중 6개국만 장관이 참석하였고,⁴⁾ 3개국은 주한대사⁵⁾ 또는 주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노무관이⁶⁾ 대리 참석한 점을 고려한다면,

각 회원 경제체의 참석을 유인할 수 있는 회원 경제체 간의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공통 이해관계나 현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이라는 광범위한 지리적 배경을 가졌다는 공통점만을 기반으로 APEC 정상회담(Leaders' Meeting)과의 연계 없이 매년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원 경제체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참석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칫 일부 국가들만의 친선이나 대한민국 고용노동 관련 시찰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셋째, 해당 포럼은 정책적인 협의나 이행 사항 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이행이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권고사항이나 추상적 선언, 상징적 메시지 전달에 그치는 형식적 모임이 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관련 국제협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ODA 사

4) 칠레, 말레이시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대만, 홍콩

5) 미국, 페루

6) 인도네시아

업과 송출국가의 비중이 높은 ASEAN 회원국과의⁷⁾ 협력체제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온바,⁸⁾ 신규 국제교류사업 또한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 여부나 규모 등을 결정하여 실리적 외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7) 10개 회원국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7개국이 송출국임

8)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ASEAN+3(한·중·일) HRD 포럼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해 오고 있음

[고용정책실]

(1) 건설근로자고용지원(일반회계, 1060-301)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사업(2026년~, 직접, 위탁)은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 인력수급을 파악하고,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청년·여성 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기능훈련 실시 및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건설업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1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	-	1,480	1,480	순증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	-	-	200	200	순증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1,280	1,28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까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2023년 예산 105억원)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과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나, 참여인원 부족, 취업률 저조 등의 이유로 2024년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편성

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숙련기능 인력난 심화, 내국인 건설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된바 정부는 20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통해 ①신규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②숙련기능인력 양성체계 강화, ③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④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동 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사업을 새롭게 구성하여 편성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 중 2억원을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및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비로 편성하고, 12억 8,000만원은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바, 이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 중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이 중 5억 1,000만원을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6억 4,000만원을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1억 3,000만원을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으로 각각 편성하여 3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의 과정 구성 개요]

구 분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입문과정)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전문과정)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주요내용	실생활공간을 구성하는 실습 위주 훈련 (프로젝트 완성 방식)	개인별 적성, 소질에 맞는 직종 선택 후 심화 기능에 대한 훈련	특성화고와 연계, 학생들에게 ‘집짓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 중심의 직무체험 및 훈련기회 제공
편성	1회차 40일, 훈련 후 20일간 현장실습 (총 5회차)	1회차 20일, 주단위 모듈식 훈련과정	총 120시간 교내 실습훈련 실시 (학기 중 14주, 최대 4개월)
대상	건설업 최초 입문자, 경력 1년 미만 초급 기능인력	입문과정 수료자, 건설 유경험자, 해당 훈련직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특성화고 재학 학생 (2개교)
훈련예산	5억 1,000만원	6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

< 건설기능인력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장려금 및 실습비 수준 조정 필요 >

고용노동부는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사업 중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을 건설업 최초 입문자 또는 경력 1년 미만 초급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임.

동 과정은 화장실 등 주거 실행할 공간을 구성하여 완성하는 프로젝트 훈련과정을 통해 공정 및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별 적성에 맞는 직종과 소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으로, 회차별 15명을 정원으로 하여 회차당 40일간 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과정을 통해 40일간의 훈련을 실시한 후 이 중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20일간의 현장실습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5억 1,000만원인바, 이 중 8,100만원은 실습생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1억 3,500만원은 현장실습 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훈련과정 40일간 훈련생에게 일 2만 7,000원을 지급하여 총 108만원을 지급하고, 훈련 종료 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에게 일 15만원씩 20일간 총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예산 편성 근거]

- ☐ 훈련기관 훈련비 : 2억 7,500만원
 -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포함 5,500만원 × 5회차
- ☐ 훈련장려금 : 8,100만원
 - 2만 7,000원 × 15명 × 40일 × 5회차
- ☐ 현장실습비 : 1억 3,500만원
 - 15만원 × 9명 × 20일 × 5회차
- ☐ 현장실습 멘토비 : 1,500만원
 - 5만원 × 3명 × 20일 × 5회차
- ☐ 포레 네트워크 지원 : 400만원
 - 20만원 × 5개팀 × 4회

훈련장려금 일 2만 7,000원 및 실습비 일 15만원의 편성 근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훈련장려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과정의 훈련장려금 단가인 1일 2만 7,000원을 참고하

여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실습비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 단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인 1일 16만 9,000원 수준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훈련생 1인이 총 60일간 훈련 전 과정에 참여할 경우 총 408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바, 훈련수당의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다른 취업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훈련수당 수준을 살펴보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5시간 미만 훈련 참여시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5시간 이상 훈련 참여시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금은 1일 1만원(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설업 퇴직자의 경우 1일 28,000원(월 최대 484,000원)을 지급받고 있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의 훈련장려금 수준 비교]

구 분	국민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안)	
		일반	건설업 퇴직자 특화프로그램	훈련	현장실습
일 지급액	5,800원	18,000원	28,000원	27,000원	150,000원
최대 지급액	월 116,000원	월 284,000원 (6개월까지)	월 484,000원 (6개월까지)	40일 1,080,000원	20일 3,000,000원

자료 : 고용노동부

즉, 고용노동부의 다른 취업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장려금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현장실습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낮아 훈련 참여에 부담이 있어 훈련 참여 유도 및 생계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장려금 수준을 높게 책정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실습비의 경우 실제 현장 투입에 준하는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할 예정인바 노무제공 대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습비를 책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장려금과 현장실습비 수준을 높게 책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첫째,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경우 최초 입문자를 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의 특성인 고용불안정 및 생계단절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타당성이 높지 않은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건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훈련장려금이 아닌 일반 구직자에 대한 훈련장려금 수준을 참고하여 단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생계보조의 목적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건설업퇴직자 특화프로그램은 일 28,000원, 월 최대 48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이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⁹⁾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월 50만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실습비를 20일간 총 300만원 수준으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셋째, 고용노동부는 실습비가 실제 현장 투입에 준하는 수준의 실습이므로 이를 노무제공대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였다고 설명하나, 동 과정은 생산활동이 아닌 교육훈련과정에 해당하는바, 실습비는 훈련 참여 유인 또는 생계보조 차원에서 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즉,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장려금과 실습비 수준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타 업종에 대한 훈련과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춘 것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예산 심사 시 훈련의 목적, 대상자 특성, 타 제도 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장려금 및 실습비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의 예산비목을 일반연구비로 변경할 필요 〉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 상황 및 고용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장기 건설인력 수급 동향, 숙련인력 공급부족 직종을 파악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등 수집·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면밀한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건설경기 변동 상황 및 고용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장기 건설인력 수급 동향, 숙련인력 공급부족 직종을 파악하는 등 훈련사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항목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모형 개발 및 중·장기 전망,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조사대상	건설분야 관련 기관 및 근로자 등
추진방법	위탁(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보들을 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건설 직업훈련 기관, 학교 직업상담 시설, 민간 연구기관 등과 공유,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예산(안)	2억원

자료 :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분석 과업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의되는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동 사업은 매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축적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일반연구비로 편성할 경우 매년 연구자 선정을 위한 절차로 인해 연구기간 단절 및 지연, 연구자 변동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반용역비의 경우에도 일반연구비와 동일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매년 계약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은 동일함.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해당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정 위탁기관으로 규정¹⁰⁾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¹¹⁾, 고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

고용노동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구기간 단절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에 대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예산편성은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음.

특히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세부사업은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과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두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할 계획임.

이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두 내역사업의 집행상황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변경만으로 양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별 예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우려도 있음.

반면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할 경우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는 동 사업에 한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집행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의 비목을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변경하여 관련 지침에 부합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2012년~, 직접)은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고 함)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동 사업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8,851억 3,000만원) 대비 591억 3,500만원(6.7%) 증액된 9,442억 6,500만원이 편성됨. 추가경정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액(9,108억 8,800만원) 대비로는 333억 7,700만원(3.7%) 증액된 수준임.

[2026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878,863	885,130	605,097	944,265	59,135	6.7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876,795	882,899	603,262	940,929	58,030	6.6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2,068	2,231	1,835	3,336	1,105	49.5

*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인원의 추계 면밀 필요 〉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중 내역사업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보험료지원금과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사업의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의 산출 내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지원인원을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 보험료지원금 산출 내역]

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frac{149,967\text{백만원}}{=434,090\text{명} \times 176\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text{개월}}$	$\frac{147,464\text{백만원}}{=420,270\text{명} \times 181\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text{개월}}$
	국민연금	$\frac{700,613\text{백만원}}{=445,965\text{명} \times 185\text{만원} \times 9\% \times 80\% \times 12\text{개월}}$	$\frac{738,062\text{백만원}}{=426,838\text{명} \times 190\text{만원} \times 9.5\% \times 80\% \times 12\text{개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frac{11,245\text{백만원}}{=90,890\text{명} \times 62.8\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text{개월}}$	$\frac{10,777\text{백만원}}{=85,702\text{명} \times 63.9\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text{개월}}$
	국민연금	$\frac{2,026\text{백만원}}{=1,990\text{명} \times 117.8\text{만원} \times 9\% \times 80\% \times 12\text{개월}}$	$\frac{1,392\text{백만원}}{=1,375\text{명} \times 111\text{만원} \times 9.5\% \times 80\% \times 12\text{개월}}$
예술인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 $\frac{396\text{백만원}}{=2,438\text{명} \times 105.6\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text{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frac{340\text{백만원}}{=2,472\text{명} \times 89.6\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text{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frac{42\text{백만원}}{=520\text{명} \times 104.7\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text{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frac{32\text{백만원}}{=392\text{명} \times 105.9\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text{개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0인 미만 사업장) $\frac{4,638\text{백만원}}{=18,059\text{명} \times 167\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text{개월}}$	(10인 미만 사업장) $\frac{4,798\text{백만원}}{=18,068\text{명} \times 172.9\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text{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frac{16,210\text{백만원}}{=129,017\text{명} \times 163.5\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text{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frac{15,707\text{백만원}}{=146,181\text{명} \times 159.6\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text{개월}}$
가사근로자	합계	$\frac{2,326\text{백만원}}$	$\frac{2,421\text{백만원}}$
	고용보험	기존 $\frac{1,525\text{명} \times 1,230,000\text{원} \times 1.64\% \times 12\text{개월}}$ 외국인 $\frac{300\text{명} \times 1,230,000\text{원} \times 1.64\% \times 12\text{개월}}$ '25 신규 $\frac{140\text{명} \times 1,230,000\text{원} \times 7.2\% \times 6\text{개월}}$ '25 신규 $\frac{140\text{명} \times 1,230,000\text{원} \times 3.6\% \times 6\text{개월}}$ *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장 지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연인원 $\frac{30,458\text{명} \times 1,454,000\text{원} \times 2.05\% \times 80\%}$
	국민연금	기존 $\frac{1,525\text{명} \times 1,230,000\text{원} \times 7.2\% \times 12\text{개월}}$	연인원 $\frac{15,336\text{명} \times 1,454,000\text{원} \times 9.5\% \times 80\%}$

	월 '25 신규 335명×1,230,000원×7.2%×6개 +단수조정 399,640원	
--	---	--

이에 따르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인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인원,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인원이 감소하였고,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지원인원 역시 월평균 1,278명(15,336명÷12개월)으로 전년 1,692.5명(1,525명+335명×6개월÷12개월)에서 414.5명(24.5%) 감소하였음.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원인원은 17,173명(11.7%) 증가하였고,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지원인원은 월평균 2,538명(30,458명÷12개월)으로 전년 1,965명(1,525명+300명+(140명+140명)×6개월÷12개월)에서 573명(29.2%) 증가하였음.

이처럼 지원인원을 산출한 이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 월평균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예술인의 경우 1분기(1~3월)만을 비교하는 경우 2024년과 2025년 지원인원이 유사하지만(2,546명→2,867명→2,864명) 1~4월 평균 지원인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2,535명→2,720명→2,839명)하였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당시 일반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사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2023~2025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월별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평균 (1~4월)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3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294,283	7,646	333,322	8,883	362,191	9,774	382,371	10,991	343,042	9,324
		국민연금	380,979	45,558	405,192	50,265	424,867	53,769	428,555	54,584	409,898	51,044
		소계	675,262	53,204	738,514	59,148	787,058	63,543	810,926	65,575	752,940	752,94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7,655	823	86,476	815	57,046	515	70,494	690	75,418	711
		국민연금	624	55	4,794	529	3,486	248	839	63	2,436	224
		소계	88,279	878	91,270	1,344	60,532	763	71,333	753	77,854	935
	예술인	고용보험	2,978	32	2,534	34	2,127	32	2,502	34	2,535	33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0,213	281	9,973	283	11,559	299	30,708	599	15,613	366
	합계		776,732	54,395	842,291	60,809	861,276	64,637	915,469	66,961	848,942	61,701
2024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430,555	11,495	427,086	11,405	436,175	12,230	442,657	13,254	434,118	12,096
		국민연금	455,097	59,456	444,295	58,466	451,010	59,899	452,913	60,392	450,829	59,553
		소계	885,652	70,951	871,381	69,871	887,185	72,129	895,570	73,646	884,947	71,649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93,029	909	92,706	912	87,545	861	84,531	861	89,453	886
		국민연금	147	13	3,155	312	3,683	272	816	68	1,950	166
		소계	93,176	922	95,861	1,224	91,228	1,133	85,347	929	91,403	1,052
	예술인	고용보험	3,432	40	2,649	37	2,521	35	2,278	32	2,720	3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15,188	1,471	118,501	1,541	118,969	1,546	128,979	1,723	120,409	1,570
	합계		1,097,448	73,384	1,088,392	72,673	1,099,908	74,843	1,112,174	76,330	1,099,479	74,308
2025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437,084	24,147	408,449	11,023	415,277	11,365	417,420	12,651	419,558	14,797
		국민연금	446,531	97,160	418,718	55,202	415,264	54,953	412,918	54,721	423,358	65,509
		소계	883,615	121,307	827,167	66,225	830,541	66,318	830,338	67,372	842,916	80,306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8,854	861	93,985	959	74,268	726	83,806	900	85,228	862
		국민연금	79	5	2,293	199	1,752	141	344	26	1,117	93
		소계	88,933	866	96,278	1,158	76,020	867	84,150	926	86,345	954
	예술인	고용보험	2,965	35	3,315	37	2,312	30	2,765	33	2,839	3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48,606	1,958	143,753	1,893	146,184	1,868	149,763	1,972	147,077	1,923
	합계		1,124,119	124,166	1,070,513	69,313	1,055,057	69,083	1,057,016	70,303	1,079,177	83,216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예산안 상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지원인원이 감소하였는데,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가사근로자 수가

2022년 370명, 2023년 1,190명, 2024년 3,607명으로 급증하였고, 2025년 역시 9월 기준으로 3,852명이 수혜대상으로 전년 수준을 상회한 점을 감안할 때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지원인원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요컨대 예술인 등 사업 참여자의 증가 추세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당시 일반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가사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유형별 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 확대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상의 정부인증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인증, 제공기관 관리·감독 업무 수행, 제도 홍보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2024년 12월 완료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¹²⁾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근로자가 알선 방식 가사종사자에 비하여 평균 시간당 임금이 높고, 1주 평균 근로시간

12) 「2024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2024. 12., 한국노동연구원

이 짧으며, 주당 평균 방문가정 수와 휴식시간 보장의 측면에서도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교육 훈련 접근성이 높으며, 가사서비스 수행 도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더 낮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직업만족도와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높아 정부인증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2024년 실태조사에서 인증기관의 38.6%, 직접고용 인증기관의 48.1%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정부 인증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동 사업에 따라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개소 및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2022년 35개소 370여명, 2023년 88개소 1,190여명, 2024년 122개소 3,600여명으로 증가하여 그동안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개소는 123개, 소속 가사근로자 3,852여명으로 2024년까지 급격하였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서울 57개소, 경기도 31개소, 인천 4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서울, 경기, 인천 도합 92개소로 전체 123개소 중 74.8%를 차지함), 강원, 경북, 광주, 대구, 제주, 충남, 충북은 1개소에 불과하며, 전남에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음.

또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됨. 참고로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직업소분류별 취업자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아이돌보미 등 육아도우미 포함)로 집계된 사람의 수만도 2022년 11만 4,000명, 2023년 10만 5,000명, 2024년 12만 5,000명으로 나타남.

그리고 위 연구에서 2024년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 조사를 한 결과, 이용 중인 가사서비스의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인 경우는 17.8%로 나타났으며, 미인증업체인 경우가 17.2%,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인증 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개소 증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수, 특히 일부 지역 소재 인증기관 수와 인증기관 계약 가사근로자 수는 충분하지 않음. 또한 아직까지는 인증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은 당초 2022년~2024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2027년까지 지원 연장한 상태임. 또한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 초기 고용

되어 동 내역사업의 지원대상이 된 자의 경우 지원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2026년 연내 종료될 것임.

즉 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된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신규 지원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인데, 향후 보험료 지원기간 36개월을 도과하여 보험료 지원이 종료되는 가사근로자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렇듯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인증기관 개소 및 가사근로자 수가 아직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2026년에는 보험료 지원이 종료되는 가사근로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된 동안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의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내내역사업에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 인증, 제공기관 관리·감독 등 업무 수행, 제도 홍보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그 중 제도 홍보를 위한 사업은 홍보리플렛 40,000부 제작과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직업소개기관 안내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홍보 방안을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 확대를 위하여 앞서 살핀 2024년 실태조사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인 직업소개소에 대한 근로계약과 인사관리 컨설팅, 우수 인증기관 선정 및 홍보, 가사근로자 고용인원 수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

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2006년~, 자치단체보조)은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2억 4,400만원(16.0%) 증액한 1,251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105,796	107,864	113,776	125,108	17,244	16.0
· 자치단체지원	94,321	98,034	104,245	80,006	△18,028	△22.5
·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	-	-	34,872	34,872	순증
· 지역고용인프라	90	90	45	90	0	0.0
· 운영비	346	395	141	295	△100	△25.3
· 산업인자위지원	11,040	9,345	9,345	9,845	500	5.4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까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전액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중 ‘지역혁신프로젝트(2025년 210억원)’ 사업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구인난 개선, 2025년 236억원)’을 분리하여 ‘지역자율계정’ 사업으로 600억 2,500만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사업 60억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사업 1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지원계정 사업에 ‘초광역 지역일자리 지원(광역이음 프로젝트)’ 300억원, ‘기초단위 연계 지역일자리 지원(기초이음 프로젝트)’ 20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지역지원계정 사업에 1,25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 개편 내용(정부안 기준)]

2025년 1,379억(전액 지원계정)			2026년 1,926억 (지원계정 1,251억, 자율계정 675억)
(1차추경) 고용둔화 대응지원(300억)		③	지역위기, 산업위기 등 지원 (200억) (4개소×5,000백만원)
지역혁신프로젝트(210억)		①	지역혁신프로젝트+구인난 개선 (675억, 지역자율계정<세종,제주 포함> 이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구인난 개선(236억)	②	초광역(메가시티) 지역일자리 지원 (300억) (3개 모델×10,000백만원)
			기초단위 연계 지역일자리 지원 (200억) (10개 모델×2,000백만원)
	조선업 재직자희망공제(229억)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129억) (잔여사업비)
	업종별 상생협약(148억)		지역상생형 격차완화(200억) (10개 모델×2,000백만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61억)			공시제 인센티브 (9억) (12개소×74백만원)
공시제 인센티브(9억)			지역 인자위 지원(77억) (17개소×450백만원)
지역 인자위 지원(77억)			산업인자위 지원 등 136억
산업인자위 지원 등 109억			

자료 : 고용노동부

〈 광역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거버넌스 및 예산운영체계 정비 필요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초광역 지역일자리 지원(광역이음 프로젝트)’ 사업과 ‘기초단위 연계 지역일자리 지원(기초이음 프로젝트)’ 사업은 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는 광역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3개 권역에 각각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기초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권역에 각각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인근 지자체 간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접 지역 간 산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후 지자체의 공모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액이 확정된 후 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광역이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 집행상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예산 교부 및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초광역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¹³⁾

그러나 동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현재까지 ‘충청광역연합’(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1개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할 법적 근거가 있는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충청권을 제외한 타 권역의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3)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주체 없이 개별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합의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바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예산 교부 및 집행관리 측면에서도, 해당 권역의 사업비 전체를 교부받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가 부재함에 따라 권역의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사업비를 직접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할 수밖에 없는바, 집행 및 정산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초광역권 연계 사업이라는 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특정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의 다른 내내역사업과 달리 광역이음 프로젝트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집행 과정이 복잡하고 사업성과 또한 타 지자체와 나누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수요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의 단가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의 자치단체보조 예산은 2025년 대비 520억 1,900만원(41.0%)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존

수행 중이던 자치단체보조 사업 예산은 감액되지 않은 채 신규로 편성된 광역이음(300억원) 및 기초이음(200억원) 사업 예산이 순증된 것을 의미함.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의 자치단체보조비 증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자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제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세종)	합 계
2025(추경포함)	126,916	-	-	-	126,916
2026(안)	111,410	60,025	6,000	1,500	178,935
증감	△15,506 (△12.2%)	60,025 (순증)	6,000 (순증)	1,500 (순증)	52,019 (41.0%)

자료 : 고용노동부

즉, 각 지자체는 기존 수행하던 일자리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광역이음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비의 10~30% 수준을 자부담하여야 하는바, 늘어난 사업비를 각 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 중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형플러스(구인난 개선)’ 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개소당 각각 약 10~30억원 수준의 국비가 배정된 바 있고, 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신규 편성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등)의 경우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

수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배정된 전남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 개소당 평균적으로 약 20~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인바, 이를 고려할 때 광역이음 프로젝트 개소당 100억원의 사업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의 광역지자체별 사업비 배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구인난 개선)	소계	(자율,제주,세종)
서울특별시	-	500	500	-
부산광역시	2,756	1,257	4,013	4,000
대구광역시	1,420	1,360	2,780	3,200
인천광역시	3,500	1,461	4,961	4,961
광주광역시	2,350	800	3,150	3,150
대전광역시	-	1,535	1,535	1,440
울산광역시	-	1,100	1,100	2,400
경기도	1,130	1,600	2,730	2,730
강원특별자치도	-	960	960	1,000
충청북도	1,350	2,663	4,013	4,013
충청남도	2,250	896	3,146	3,495
전북특별자치도	800	2,610	3,410	4,296
전라남도	-	2,500	2,500	15,000
경상북도	2,900	2,250	5,150	7,440
경상남도	-	2,700	2,700	2,900
세종특별자치시	-	740	740	1,500
제주특별자치도	2,544	968	3,512	6,000
합 계	21,000	25,900	46,900	67,525

자료 : 고용노동부

(4)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고용보험기금, 1083-357)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사업(2008년~, 직접)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800만원(△2.7%) 감액된 4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3,546	4,285	1,973	4,167	△118	△2.7

* 자료: 고용노동부

< 포상금 집행 실태 점검 등 사업 관리 필요 >

동 사업의 세부사업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원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32억 4,0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5.9%)이 감액된 3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2년 예산 19억

5,400만원에서 2023년 예산 3,240만원으로 증액된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감액임.

[포상금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포상금 예산	포상금 예산현액 (이·전용 반영) (A)	집행액 (B)	집행률(B/A)
2020년	1,230	1,515	1,500	99.0
2021년	1,230	3,939	3,910	99.3
2022년	1,954	2,754	2,750	99.9
2023년	3,240	3,240	3,149	97.2
2024년	3,240	3,240	2,606	80.4
2025년 9월	3,240	3,240	1,708	52.7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기 고용안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수급 제보·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행이 증가하였고 현재는 고용안정 사업 축소로 집행 감소 추세라고 설명함.

실제로 2024년에는 집행액이 26억 600만원으로 2022년 집행액인 27억 5,000만원보다 낮았으며 집행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5년 역시 9월 기준 집행률이 52.7%로 연말까지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포상금 집행액뿐 아니라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 또한 고용

안정 사업 확대 시기보다 감소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을 2018년 도입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전국 관서에 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기획수사 등을 수행하고¹⁴⁾, 고용보험수사관은 신고·제보에 기초한 수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7,973건, 2022년 25,524건, 2023년 24,456건, 2024년 25,783건으로 2024년은 2021년 대비 7.8% 감소하였음.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부정수급건수	27,973	25,524	24,456	25,783	13,518
부정수금액	588	465	524	457	21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에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2024년 2조 5,738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바(2026년 예산 4조 728억원으로 2024년 대비 58.2% 증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등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의 필요성이 있음.

14) 「고용보험수사관 직무규정」 제3조(수사관의 직무)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2.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제한, 추가 징수 등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직무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시한 부정수급에 관한 직무

[모성보호육아지원 내역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내역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2,881	3,019	3,263	3,537	3,525	3,792
유산사산휴가급여	14	16	17	23	31	27
육아휴직급여	13,006	16,616	18,063	20,525	34,030	33,9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884	1,063	1,281	1,580	2,335	2,68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68	61	62	73	242	269
난임치료휴가급여	-	-	-	-	61	25
계	16,853	20,775	22,686	25,738	40,225	40,72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렇듯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최근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관련 적발 실적과 포상금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는바, 포상금 집행 실태 점검과 고용보험수사관 역량 제고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고용정책관 · 통합고용정책국]

(1) 사회적기업 지원(일반회계, 1037-311),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지특회계 1037-312)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사회적기업 지원’(2011년~, 출연) 및 ‘사회적기업 육성’(2003~, 보조)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창업·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인식개선, 자금지원 등 사회적기업 관련 다양한 지원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¹⁵⁾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4억 6,000만원(202.2%) 증가한 8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321억원(순증)이 편성되었음.

[2026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사회적기업 지원	32,979	28,412	23,819	85,872	57,460	202.2
■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44,385	-	-	32,100	32,10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15)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식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단계의 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모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사회적 목적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실업·복지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게 되고,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교육훈련·시설비·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¹⁶⁾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음.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등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디딤돌)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 예비포함)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	○
	소셜벤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시장진입단계에 따른 맞춤형 원스톱 지원	○	○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지원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7년 55개사에서 3,715개사(2025. 6. 기준)로 확대되었음.

[연도별 사회적기업 수]

(단위: 개사)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3	2024	2025.6.
인증기업	55	501	3,441	2,777	3,737	3,762	3,715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 절차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소재지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며, 진흥원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 사전검토에 따른 보고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됨.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및 절차]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요건 구분	심사 기준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절차>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인증상담 및 안내 진흥원	⇒
신청서 접수 진흥원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자료: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재정사업 간 정합성 제고 필요 〉

정부는 2023년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¹⁷⁾을 수립·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간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제공형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 사회적기업의 매출 중 공공 부문 비중이 42%로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사회적기업 지원이 획일적 지원체계로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관계없이 인증만 받으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라는 점,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공시 비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존 정책의 한계점으로 인식하였음.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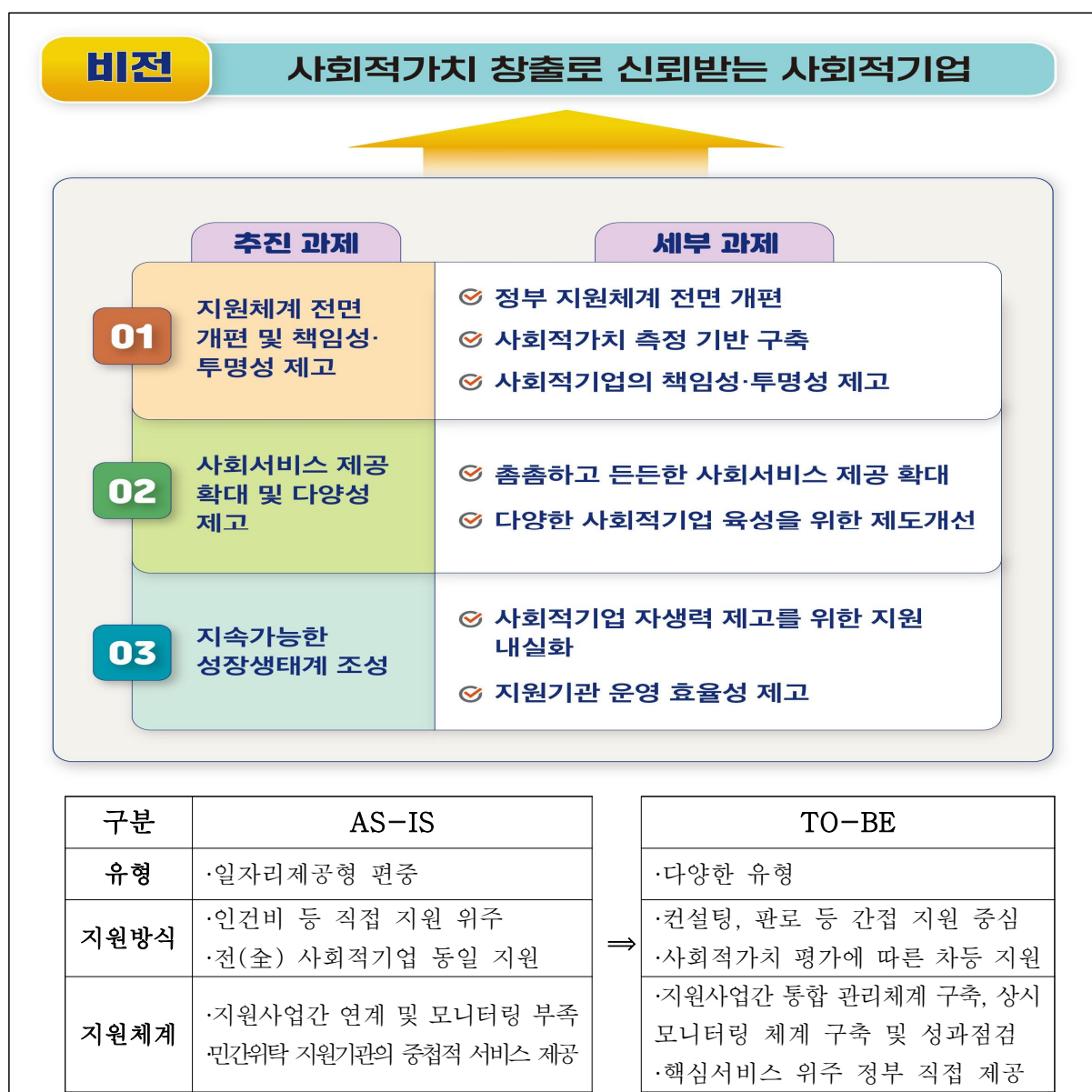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9.)에서 지적된 기존 정책 한계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화]** 「사회적기업법」 시행('07~) 이후 인건비 중심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이미지가 정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고착
 -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인증이 용이한 일자리제공형(3명 이상 고용, 고용 인원 中 취약계층 30% 이상 등)이 대다수*이며 소규모 기업 비중 증가**
- **[일반 중소기업과 차별성 부족]**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중 64.5%가 55세 이상 근로자로 급속한 고령화 추세 감안시, 사회적목적 퇴색 우려
 - 특히, 업종 구조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경비·미화 등) 또는 서비스(요양보호 등) 제공 경우 사실상 일반 중소기업과 유사
- **[높은 정부지원 의존]**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 제약
 - 인건비 등 직접지원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는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 시민 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
 - 정부의 인건비·사회보험료('07~'23년간 약 1조 7,803억원 편성) 등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
- **[획일적 지원체계]**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으므로 기업의 사회적가치 제고 유인 부족
 - 인증을 받으면 ①공공기관 우선구매(무기한), ②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③인건비(예비2년+인증3년), ④사업개발비(예비2년+인증3년) 등 동일하게 지원
- **[낮은 투명성]**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받음에도 경영공시 등 기업의 자발적인 투명성 확보 노력이 부족
 - 정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 발생
- **[지원기관 운영 비효율]** 인증, 창업지원,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위탁수행하는 민간 지원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문제, 기능중복 발생
 -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다수 위탁기관에 중복선정*되거나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 서비스질 하락 등 우려

*자료: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2023.9.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췌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건비 직접지원 폐지, 사회적 가치·경제적 성과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차등화,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촉진 등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9.) 비전 및 전략목표]



*자료: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2023~2027)(2023.9.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췌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2,02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 284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의 중기 재정계획 상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에도 사업규모의 축소 및 통폐합 등이 반영되었음.

[연도별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년 예산안
사회적기업 지원(일반)	339.2	353.1	454.1	543.1	716.9	599.2	644.0	692.6	329.9	284.1	858.7
사회적기업 육성(일반)	301.0	199.1	298.5	223.5	212.4	222.0	217.4	246.2	-	-	-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791.1	761.8	769.2	902.9	960.5	986.2	1044.0	1083.2	500.4	-	321.0
계	1,431.3	1,314.0	1,521.8	1,669.5	1,889.8	1,807.4	1,905.4	2,022.0	830.3	284.1	1,179.7

*주1) 예산액은 추경 기준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지특회계)은 제주 계정을 합산한 금액

주2)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회적기업 지원(일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인식개선 등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일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 등 지원 *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일반)으로 통합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사업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사회적기업 지원 (일반회계, 1037-311)	'23~'27 (2024 예산안 편성)	69,259	28,589	30,018	31,519	-	
	'24~'28 (2025 예산안 편성)		32,990	49,574	52,097	54,746	57,527
사회적기업 육성 (지특회계, 1037-312)	'23~'27 (2024 예산안 편성)	103,377	47,665	-	-	-	
	'24~'28 (2025 예산안 편성)	예산 전액 삭감으로 미작성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180억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일반회계, 1037-311)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25년 폐지된 사회적기업 육성(지특회계, 1037-312) 사업 예산안은 2026년 321억원이 순증되는 등 2026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안은 전년(284억원) 대비 약 4배 증액되었음.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일반회계) 사업 내 다수의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300억원, 사회적 기업 자금지원 8억원, 사회적경제 교육 4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 시범사업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비 187억원도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존 내역사업인 사회적 기업 판로지원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업도 각각 15억원, 48억원이 증액되었음.

또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지특회계) 사업은 2023년 정책 전환에 따라 2025년 폐지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 32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예산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내역사업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비 고
사회적기업 지원 (일반회계, 1037-311)	기관운영 등	15,281	16,337	진흥원 운영경비(인건비 등), 지원 운영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30,000 (순증)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팀에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업모델 현실화 지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3,493	4,963 (1,470 증)	마케팅, 제품개발 등 맞춤형 판로지원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9,356	14,171 (4,815 증)	성장지원센터 중심으로 공간지원 및 교육, 멘토링, 설명회 제공,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사회적가치 측정 미흡기업대상 심화코칭, SVI 체계 개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282	504 (222 증)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소비진작을 위한 브랜드 강화, 주간행사, 국제협력,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등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	800 (순증)	크라우드 펀딩, 투자유치대회 등을 통해 일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시범사업)	-	18,697 (순증)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교육	-	400 (순증)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타당성 검토
	소계	28,412	85,872 (57,460 증)	
사회적기업 육성 (지특회계, 1037-312)	일자리창출	-	32,100 (순증)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규모 확대는 창업·성장·판로·자금조달·인식 개선 등 사회적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지역 통합돌봄·노동통합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민간·사회적기업 간

협력 구조를 실험해보는 등 종합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이를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정책전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2023년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을 축소·통합하여 정부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에 반해, 2026년 예산안에는 창업지원 300억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187억원 등 신규 직접지원 사업 신설 및 기존 사업 증액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둘째, 기본계획에서는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 기반 지원을 지향하면서 그 추진방안으로 사회적가치 평가(SVI)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에 비해,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확대된 사업 중 SVI 연계 여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원(일반회계) 내 내내역사업 “유망기업 스타트업 지원”(76.9억원)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49.8억원), 인건비 지원 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321억원)¹⁸⁾ 정도로 확인되어, 2023년 기본계획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SVI 결과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SVI 등급이 낮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므로, SVI 성과 기반에 따른 차등지원 요소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셋째, 기본계획은 지원 패러다임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며 정부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부 주도형 육성정책이 확대되고, 특히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는 국가보조금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시장 중심 자생을 강조한 기본계획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2023년 발표된 기본계획과 지원 방식·평가 연계·정책 기조 등이 불일치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유관기관 등 정책 집행 주체와 수요자 전반의 정부 정책 및 재정사업에 관한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내용을 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¹⁹⁾는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조정한 뒤 예산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19)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2023년 기본계획이 2027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어 향후에도 기본계획과 정책기조 간 불일치가 반복될 수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성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2026년 사회적기업 지원(일반회계, 1037-311)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등 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은 총 186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이후 본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2026회계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 개요	예산안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사업, 사회적기업 성과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확대 등 사업 수행	18,697
①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13,720
②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확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977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내내

역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약 137억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내 창업지원(300억원) 사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142억원) 사업을 제외한 기타 내역 사업보다 그 규모가 크며, 수도권 광역지자체 3곳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예산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내역사업	'26년 예산안	비 고
사회적기업 지원 (일반회계, 1037-311)	기관운영 등	16,337	진흥원 운영경비(인건비 등), 지원 운영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30,000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팀에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업모델 현실화 지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963	마케팅, 제품개발 등 맞춤형 판로지원 지원, 공공구매 활 성화,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14,171	성장지원센터 중심으로 공간지원 및 교육, 멘토링, 설명 회 제공,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SVI 체계 개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504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및 소비진작을 위한 브랜드 강 화, 주간행사, 국제협력,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등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800	클라우드 펀딩, 투자유치대회 등을 통해 일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시범사업)	13,720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추진
		4,977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 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교육	400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타당성 검토
	소계	85,872	

*자료: 고용노동부

[2026회계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내용]

사업 구분	사업 개요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137억 2,000만원)	□ 사업내용: 노동통합, 통합돌봄 등 2개 전략사업 ①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이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용, 권리 보호 등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과 연계 ② (통합돌봄) 지자체-민간지원기관이 취약계층 발굴 및 수요 파악 → 사회적기업이 돌봄, 운동,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 (지원방식) 비수도권 지자체 공모 선정(14개 광역지자체) 고용부(70%) + 지자체(30%) ○ (지원내용) 전문가 용역비, 홍보비, 출장비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추진체계 민간 지원 기관 사 회 적 기 업 사업 화 ↔ 협 력 자 치 단 체 공 모 신 청 → 노 동 부 (진 흥 원) 교 부 → 자 치 단 체 지 원 → 민 간 지 원 기 관 + 사 회 적 기 업 정 산 → 자 치 단 체 실 적 보 고 ↔ 관 리, 평 가 노 동 부 (진 흥 원)
사회적가치 활성화 (49억 7,700만원)	□ 사업 내용: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의 성장 의지 독려,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사회성과(인센티브) 예시 사회적기업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 ·SVI 및 SPC 참여 → 지자체(민간지원기관) ·인센티브 대상기업 발굴·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고용부(진흥원) ·성과 측정 및 사업 관리 ○ (지원방식) 지자체 공모 선정(17개 광역지자체), 고용부(50%) + 지자체(50%) □ 추진체계 사회적 기업 사업 공모 → 자치 단체 발굴 · 심사 → * 진흥원 SVI 우대 지역별 민간 지원기관 사회 성과 평가 (SPC) → 노동부 + 지자체 매칭, 성과 보상 → 사회적 기업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통상적인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분야 또는 전체 사업 대상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동 사업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개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된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보기에 다소 광범위한 것으로 보임.

상기 계획대로 대상 광역지자체가 차년도에 동 신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된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관계기관·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명확한 사업모델 및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지자체, 민간기관, 사회적기업 등 사업 관련 기관이 차질없이 사업을 준비·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²⁰⁾.

20)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신규사업인만큼, 현재 지자체, 전문가, 민간지원기관과 사업모델 및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을 고려할 필요 등 〉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²¹⁾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32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44,385	-	-	32,100	32,10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에 관한 직접지원 사업으로, 2023년 사회적기업 기본정책²²⁾에 따라 축소되어 2025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6년 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것임.

[연도별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년 예산안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791.1	761.8	769.2	902.9	960.5	986.2	1044.0	1083.2	500.4	-	321.0
계	1,431.3	1,314.0	1,521.8	1,669.5	1,889.8	1,807.4	1,905.4	2,022.0	830.3	284.1	1,179.7

*주) 예산액은 추경 기준이며, 제주 계정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21)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식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단계의 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모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사회적 목적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말함.

22) 동 검토보고서 73p. 참조

동 사업의 2026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SVI²³⁾ 평가에 따라 월 50~90만원이 지급되며, 주로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2026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321억원: 5,088명 × 700,000원 × 12개월 × 75%

① 5,088명 = 1,272개소('24년 지원기업 중 인증·예비 1년 차<30인 미만> 402개소 + '24년~'25년 신규 인·지정<30인 미만, 추계> 812개소, + '24년 SVI 탁월·우수 기업<30인 이상> x 4명(일자리창출사업 평균 지원 인원)

② 700,000원 = 월 평균 지원금액(50만원 ~ 90만원 중위값)

③ 75% =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지원내용: -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최대 3년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2026년 동 사업에 반영된 인건비 지원금은 예년 대비 지원 수준이 낮아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23)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서,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등의 관점에서 14개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 우수(75~89점), 양호(60~74점), 미흡(45~59점), 취약(45점 미만)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됨. 평가 절차로서, 1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검토·평가하여 SVI 점수를 산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차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지원금(월 50~90만원)은 정액 지급으로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액²⁴⁾ 216만원의 24~42%에 그치는 수준이나, 2024년 이전의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70%(정률 기준)를 기준으로 144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더하여 월 15~20만원의 사회보험료가 추가 지급된바, 차년도 예산안의 신규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수준은 과거 지원금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월 9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며, 지원 기간도 과거 최대 5년이었던 것에 비해 2026년 신규 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축소되었음.

[연도별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사업 지원내역]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 임금				-	임금 일부(정액)
지원 대상	일반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근로자 일반근로자는 대상 제외
지원 비율 (지원금)	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1,275,736원 (인증) 1,093,488원	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1,340,108원 (인증) 1,148,664원	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인증 모두) 1,407,406원	취약계층 근로자 (예비, 인증 모두) 1,442,518원	-	취약계층 근로자 (SVI 탁월) 900,000원 (SVI 우수) 700,000원 (일반*) 500,000원 * SM 양호 이하 또는 미참여
	최저임금 60~70% (예비) 70% , (인증) 60%		최저임금 70% (예비, 인증) 70%		-	최저임금의 24~42% (SVI 탁월) 최저임금 42% (SVI 우수) 최저임금 33% (일반) 최저임금 24%
	일반근로자 (예비) 911,240원 (인증) 728,992원	일반근로자 (예비) 957,220원 (인증) 765,776원	일반근로자 (예비) 1,005,290원 (인증) 804,232원	일반근로자 (예비) 1,030,370원 (인증) 824,296원	-	일반근로자 미지원
지원 기간	최대 5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최대 3년(예비, 인증) (기본 2년 + SM 우수 이상 시 1년)
기타	사회보험료 추가 지급(월 15~20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 없음

*주: 2024년의 경우 신규 사업은 없이, 2023년 이전에 시행된 사업의 약정기간 보장을 위해 편성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24) 월 환산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곱한 금액임.

참고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70%가 지원된 2021~2024년 동
사업의 실행률은 70~80% 수준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된 바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특) 연도별 실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실행률(B/A)
2021	88,367	85,331	77,433	87.6
2022	99,272	95,759	80,801	81.4
2023	103,377	102,859	83,404	81.0
2024	47,665	44,385	33,612	70.5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현재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는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50~70%
를 지원하고 있는데 70%를 지원하는 경기, 광주, 제주의 경우 집행률
이 9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나, 50%를 지원하는 전북, 전남의 경우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동 사업의 지원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구분	경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인건비 지원수준	최저임금 70% (1,467,380원)	최저임금 70% (1,467,380원)	최저임금 50% (1,048,130원)	최저임금 50% (1,048,130원)	최저임금 70% (1,467,380원)
예산 규모	58억원	22.5억원	23.5억원	10억원	8억원
예상집행률	88%	86%	40%	45%	93%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들의 경우 2026년도 동 사업의 지원 수준이 낮아 집행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²⁵⁾을 제시하고 있음²⁶⁾.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의견>

- “지원금(일반기업 기준 월 50만원)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기준 4대 보험료 등을 비롯한 인건비 자부담이 2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됨으로 신규고용 창출 어려움”
- “지방비 자체사업 추진 시 기존 국비 지원 때보다 -20%(월 105만원) 지원에도 기업이 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원을 거절하는 곳들이 많음”
- “지원수준이 기존 시행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기업 자부담 증가로 신청 저조 예상”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30인 미만 소규모 (예비)사회적기업의 SVI 등급은 대체로 우수 등급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시 SVI 등급별 차등지원 방식은 현실적으로 사업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초기 단계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25) 지자체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담당자들은 동 사업에 관해 “지원금(일반기업 기준 월 50만원)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기준 4대 보험료 등을 비롯한 인건비 자부담이 2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5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하였음.

26) 아울러, 차년도에 각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실시 여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으나, 2025년과 유사하게 지자체 자체 사업이 실시될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금은 지자체 사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업간 경쟁력이 떨어져 집행부진 가능성이 심화될 수 있음.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사업은 정부지원의 사회적가치 성과 연계 필요성에 따라 SVI 등급별 차등지원(탁월 90만원/월, 우수 70만원/월, 일반 50만원/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5,181개소 중 우수 이상 비율의 등급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1.7%로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사회적기업 SVI 분포 현황(2025. 8. 기준)]

구분	합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체 사업장 수	5,181개소	3,715개소	1,466개소
SVI 우수 이상 비율	11.7%	15.0%	3.2%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최근 SVI 평가를 받은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규모가 갖춰진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우수 이상 등급의 분포가 2023년 52.4%, 2024년 57.5% 수준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2023년 16.1%, 2024년 31.1%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양호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²⁷⁾.

27) 2025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SVI 평가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기업 지원 축소에 따라 SVI 평가에 관한 관심·수요가 줄어든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상대적으로 SVI 평가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으로 인해 2025년의 30인 미만 사업장 내 우수 이상 등급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23~2025년 SVI 평가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평가 참여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이하
2023년 (1,218개소)	30인 미만	1,113(100.0%)	19 (1.7)	160 (14.4)	297 (26.7)	637 (57.2)
	30인 이상	105(100.0%)	4 (3.8)	51 (48.6)	26 (24.8)	24 (22.9)
2024년 (949개소)	30인 미만	848(100.0%)	36 (4.2)	228 (26.9)	249 (29.4)	335 (39.5)
	30인 이상	101(100.0%)	13 (12.9)	45 (44.6)	25 (24.8)	18 (17.8)
2025년 8월 (106개소)	30인 미만	87(100.0%)	2 (2.3)	35 (40.2)	31 (35.6)	19 (21.8)
	30인 이상	19(100.0%)	5 (26.3)	8 (42.1)	2 (10.5)	4 (21.1)

*주: 괄호 내 수치는 구성비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SVI 등급별로 차등지원할 경우, 다수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최저 수준의 지원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초기 단계 소규모 기업의 경영 여건상 인력 채용 여력이 낮고, 등급 향상도 쉽지 않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초기 단계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수준과 지원방식은 실제 현장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수준 및 지원기간의 합리적 조정, SVI 등급 활용방식 보완을 통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2년~, 직접)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7억 7,800만원(16.8%) 증가한 9,0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37,609	777,181	502,325	907,959	130,778	16.8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²⁸⁾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²⁹⁾를 근거로 하며,

당초에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

28)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2022~2024년) 시행했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것임³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³¹⁾이 취업애로청년³²⁾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며,

비수도권 유형은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0)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한시사업(2022~2024년)으로 실시한 바 있음.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업종	지원대상청년	지원기간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목표인원	예산
모든 업종	취업애로청년	2년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월, 1년) + 2년차 480만원	12.5만명	6,078억원

31)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32)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사업 구분	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u>수도권 소재</u>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u>사업주</u> 대상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u>비수도권 소재</u>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u>사업주</u> 및 <u>재직청년</u> 대상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 요건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내용	대상기업: 1년, 최대 720만원	대상기업: 1년, 최대 720만원 대상청년: 2년, 최대 720만원 ※ 대상 기업 소재지에 따라 차등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2년~, 직접)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원사업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 내역	예산안
기업지원금	2025년 이전 채용자 중 근속기간이 지원 요건에 도래한 청년 채용 기업	662,022
	2026년 신규 채용자(105,000명) 중 근속기간이 지원 요건에 도래한 청년 채용 기업	129,203
	소 계	791,225
청년근속 인센티브	2025년 채용자 중 근속기간이 지원 요건에 도래한 청년	72,514
	2026년 신규 채용자(50,000명) 중 근속기간이 지원 요건에 도래한 청년	16,912
	소 계	89,426
민간위탁 사업비	민간 위탁사업 경비	26,108
기타	수용비 등 경상경비, 사업출연금	1,200
계		907,95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악화된 고용환경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 채용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을 완화하는 한편, 청년층에게는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특히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동 사업은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이나 최근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낮

은 편으로, 최근 연도별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43%로 크게 저조한 바 있고, 이후 2023~2024년의 경우 예산액의 약 80%가 집행됨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연도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42,820	△ 51	542,769	542,769	233,321	43.0	43.0	-	309,448
2023	889,078	-	889,078	889,078	719,429	80.9	80.9	-	169,649
2024	657,680	-	657,680	657,680	537,609	81.7	81.7	-	120,071
2025. 7.	777,181	25,416	802,597	802,597	502,325	62.6	62.6	-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사업 수요 및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추계 및 사업 모니터링, 홍보 등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그간 고용유지율 및 경기상황, 고용동향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로 2024년에는 지원 목표인원이 125,000명인 데에 비해 12월 기준 채용인원은 89,703명으로, 당초 추계의 72% 수준에 불과³³⁾한 바 있으나, 2025년의 경우 지원 목표인원 107,000명 중 10월 현재 78,415명(73%)이 채용됨에 따라 2025년 사업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33) 이후 2025년 3월까지 기업의 채용자 명단을 받아 재보정한 결과, 2024년 전체 지원 인원은 101,519명으로 지원 목표 인원의 81%가 달성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채용인원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 목표	채용인원	지원 목표	채용인원
1월	125,000명	96명	107,000명	1,640명
2월		3,415명		4,353명
3월		11,776명		13,815명
4월		21,022명		25,784명
5월		30,106명		35,519명
6월		37,978명		45,482명
7월		47,433명		56,662명
8월		55,368명		65,636명
9월		62,324명		77,087명
10월		71,375명		78,415명(10.12.기준)
11월		82,865명		-
12월		89,703명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근속 인센티브’³⁴⁾ 신속 지원분의 경우, 편성 당시 2025년 채용인원 48,150명을 기준으로 채용 시점에 따른 근속기간과 지원 요건(근속 6개월 차 지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10월 현재 채용 인원이 31,518명(65%)에 불과한 상황으로, 2025년 청년근속 인센티브 예산(159억 8,600만원) 집행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34)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I 유형은 사업주 지원, II유형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은 청년근속 인센티브를 근속 18·24개월 차에 각각 2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25년 예산안에 청년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점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없었으나, 추경으로 청년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차부터 신속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증액한 바 있음.

아울러 2026년 동 인센티브의 예산안 894억 2,600만원은 2025년 채용인원 48,150명의 차년도 집행분(725억 1,4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한바, 실제 청년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채용인원과 지원금 신청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청년근속 인센티브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 내역	예산안
2025년 채용자 지급분	72,514
2026년 신규 채용자(50,000명) 지급분 일반 비수도권(47,000명), 우대지원지역(2,250명), 특별지원지역(750명)	16,912
계	89,426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2025년 10월 현재 채용 시점과 근속기간을 고려한 청년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9,589명이나, 실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인원은 4,733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지급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청년미래플러스(일반회계, 1051-308)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신규, 보조)은 산업별 협회 또는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이하 ‘ISC’³⁵⁾)가 회원사인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4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청년미래플러스	-	2,000	1,493	4,060	2,060	103.0

*자료: 고용노동부

35) Industrial Skills Council

〈 사업의 목적 · 대상 집중 및 통합 추진계획 구체화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특정 산업별 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①구직청년 대상 IT, 바이오, 자동차 등 특정 산업(직무)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회원사 기업 취업 연계, ②재직청년 대상 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산업 단위’의 경력형성·개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아 20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또는 청년 신입직원(만 15~34세 이하)으로, ①구직청년에게는 산업특화 실무중심의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구인기업 매칭 등 취업 연계를, ②재직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맞춤형 OJT, 멘토링, 경력설계를 지원하여 산업 내 (중간)관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 동 사업은 2026년부터 기존 ‘직장적응지원 사업’³⁶⁾과 통합하여 추진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양 사업이 재직청년 대상 경력설계, 직장적응 등 노동시장 안착 지원 목적 등이 동일하다고 보아, 재직 청년의 경력설계부터 직장적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36)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되었음.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 개편(안)]

2024년	2025년	2026년
-	신설 청년 미래플러스(20억) 산업계 주도 재직청년 경력설계 등 지원(협회 등 공모, 국고 100%)	통합 청년 미래플러스(41억) 산업계 주도 재직청년 경력설계 등 지원+직장적응 지원(국고 100%) * 전달체계 개편 ▲ 인력공단 출연
신설 직장적응 지원(44억) ①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 ②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국고 100%)	개편 직장적응 지원(46억) ①산단 입주기업 등 신입직원 온보딩 + ②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지자체 매칭 30%)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양 사업의 통합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대상과 목적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목적과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청년 미래플러스는 구직청년과 재직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구직청년에게는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직청년에게는 산업별 맞춤형 경력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기업의 CEO, 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에게는 청년 친화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신입청년 직원에게는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즉,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과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구직청년, 재직청년, 기업 CEO 및 관리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대비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실적으로 하나의 운영기관이 각각의 사업과 사업대상 그룹을 모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 프로그램의 목적이 청년취업 지원, 산업인재 육성, 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청년 미래플러스 및 직장적응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청년 미래플러스	직장적응지원
사업목적	사업계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지원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 고용 전주기 지원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등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입직 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지원하여 쉬었음 전환 방지
사업대상	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청년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채용 후 1년 이내인 신입 청년직원
사업 및 지원내용	구직청년: 취업 컨설팅+직무교육+멘토링 등 산업(직무)특화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재직청년: 산업별 성장로드맵에 근거한 맞춤형 경력설계·멘토링·OJT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On-boarding) 제공 ※ 온보딩 프로그램은 협업,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신입직원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2025년 예산	20억원(업종별 3개 프로그램)	46억원
추진방식	출연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70%)

* 자료: 고용노동부

아울러,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40억 6,000만원으로 2025년도 각각의 사업 예산액을 합친 66억원 대비 약 25억원이 감액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할 경우 사업 전반의 품질과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성과관리, 사업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목적을 각각 추구하기보다는 구직청년의 취업연계 및 재직청년의 온보딩 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등 성장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 통합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2025년,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의 이력이 비교적 짧은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나 성과평가 결과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통합은 사업방식·예산조정·전달체계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가령, 청년 미래플러스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직장적응 지원은 지자체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면서 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의

운영체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 및 전달체계 변경 등이 되더라도 실질적 성과 비교나 효과성 검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 담당자 간 사업 이력 및 성과, 노하우 등에 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운영성과 분석에 기반한 효율적인 사업 통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통합 추진 이전에 각 사업의 성과요소별 효과성 분석과 운영상 강·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통합 이후의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설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일반회계, 1331-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1995년~, 직접)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고용평등상담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원(21.3%) 증가한 2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회계연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733	1,876	1,186	2,276	400	21.3

*자료: 고용노동부

〈 민관 고용평등상담실의 협력 모델 구축 노력 필요 〉

‘남녀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 및 민간 위탁 방식의 (심층)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 예산안은 1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 근로자의 대처방안 등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 과정을 통해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은 행정기관(지방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활용 안내 및 근로감독관과의 연계·협업 활성화로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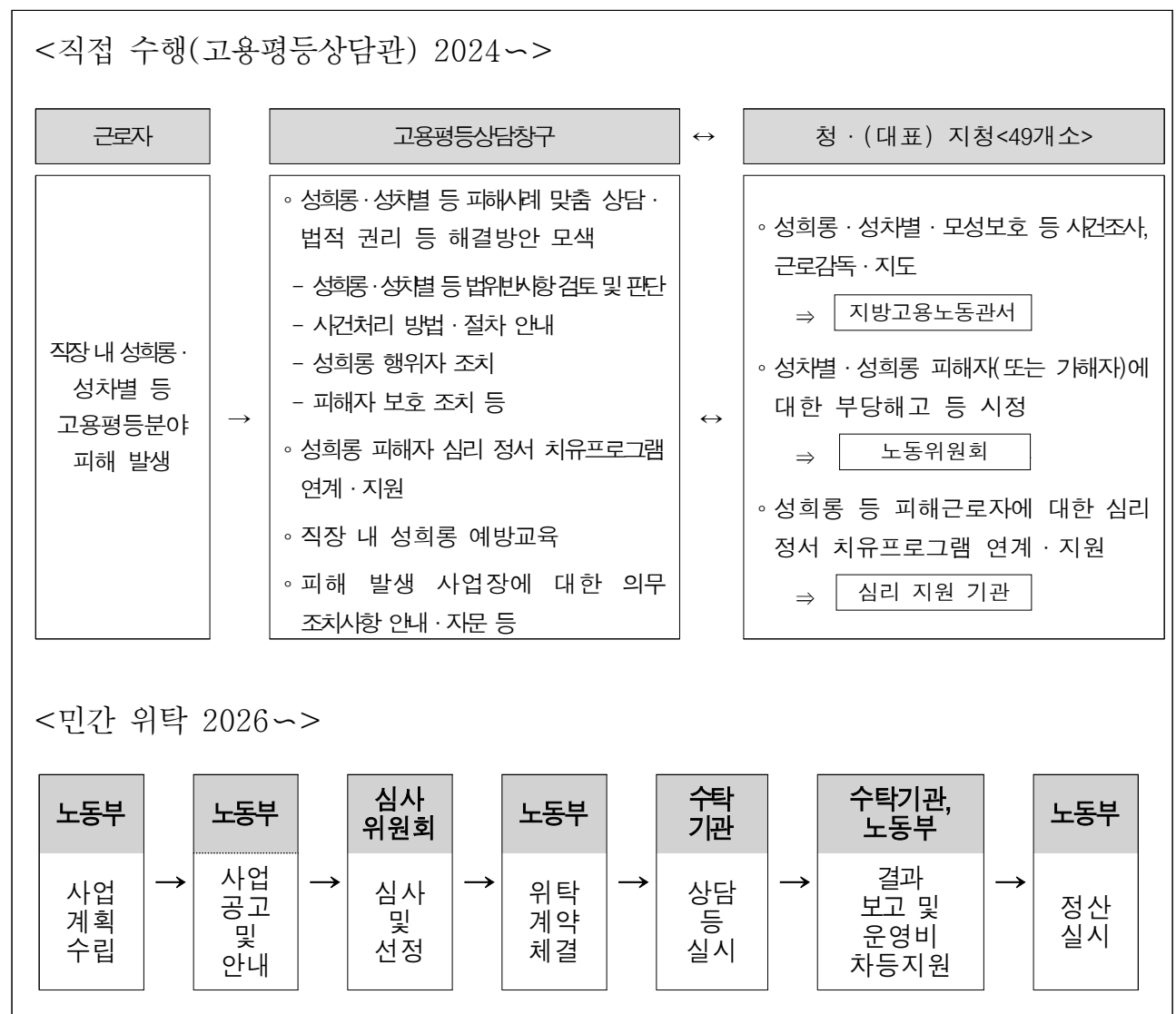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당초 사업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상담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상담기능과 지방관서의 조사·감독 기능 간 유기적 연계·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³⁷⁾에 따라 2024년부터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해 왔음³⁸⁾.

37)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동 사업에 관해 ‘중앙부처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함. 실제로, 보조사업자 일부는 유사중복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일부 성과는 유사중복 사업의 본연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상담 지원’의 특성상 전달체계별 상담 목적을 기준으로 업무를 나누기 어렵다면 이들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고 지적하였음.

38) 25년 8월 현재 고용평등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원은 총 15명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각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직접사업과 민간 위탁사업이 병행 추진될 예정으로,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 사업의 예산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실 경비 8억 1,200만원 외에 민간 위탁사업 경비 4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사업수행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 내역		예산안
고용노동부 직접 사업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인건비(급여, 급식비, 고용부담금 등)	609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일반수용비	176
	기타(여비, 자산취득비 등)	27
	소 계	812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위탁 운영		450
계		1,262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민간분야에 축적된 상담역량 전문성 활용 및 대국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정·운영을 병행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계획³⁹⁾임.

다만, 동 상담실은 양성평등,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일·가정 양립 등 방대한 분야의 상담을 실시하는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시설과 중복되는 측면⁴⁰⁾이 있는 상황에서 민관 상담을 병행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민·관 상담실 간 기능과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방식을 설계하고, 내담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39) 참고로, 정부 국정과제 96번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은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확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40) 공공 부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고용노동부), ‘인권상담조정센터’(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피해상담소’(여성가족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직장맘지원센터’(서울시), 충남인권센터(충청남도)에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여성노동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체계적인 감독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중장년층취업지원(일반회계, 1340-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2006년~, 보조)은 40대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억 100만원(34.7%) 증가한 24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회계연도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중장년층취업지원	20,067	18,443	17,034	24,844	6,401	34.7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15,737	18,343	17,034	22,923	4,580	25.0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80	100	-	121	21	21.0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	-	1,800	1,800	순증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4,235	-	-	-	-	-
· 장년고용연구지원	15	-	-	-	-	-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사업은 40세 이상 중장년이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한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2026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이 신설되었음.

〈 시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성과 및 사업모델에 관한 점검·보완 노력 필요 〉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은 적극적 구인에도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일손부족 업종과 50대 이상 퇴직자를 매칭하여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취업의지가 있는 조기퇴직자에게는 신속한 재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1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제조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는 인력난 해소를, 취업 의지가 있는 조기퇴직자에게는 신속한 재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노후소득 보장
사업 대상	5인 이상 일손부족 업종(‘26년 시범: 제조·운수창고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6.1.1. 이후 취업한 중장년 중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및 국적: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 전 요건: ‘25~‘26년 중 실시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사업**을 수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자 취업 후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지원 내용	취업자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예산안	18억원: 1,000명 × 180만원(6개월분)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최근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명)의 본격 은퇴 연령 진입과 더불어 50대 고용 지표가 악화⁴¹⁾됨에 따라 50대 재취업

41) 2025년 4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0대 고용률이 77.3%로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바, 2025년 5월 고용노동부는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동 계획은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기회 확대, 일경험 지원, 통합적 취업지원을 위한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취업 의지가 있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노동제공 유인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2026년에는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동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예상된다⁴²⁾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손부족 업종의 인력난은 노동공급 부족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서, 이를 구직자 인센티브로만 대응하면, 단기 순환형 취업만 늘릴 우려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이 미충원율이 높은 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취업의지가 있는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의 대상을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미충원율 상위 업종’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음.

그러나, 이들 업종의 인력난은 근로조건⁴³⁾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 기간 이후 한시적(2022~2024)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후 2025년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8,000억원 수준임.

43) 가령 제조업은 장시간 근로·교대근무·지방 중소공단 중심의 지역 편중 문제가, 운수·창고업은 교대근무·저임금·불규칙한 근로시간·등의 문제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미스매치로서, 노동 수요측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적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 공급자 측 유인정책은 임시 보정으로서 보조금 의존형 고용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를 유지시킬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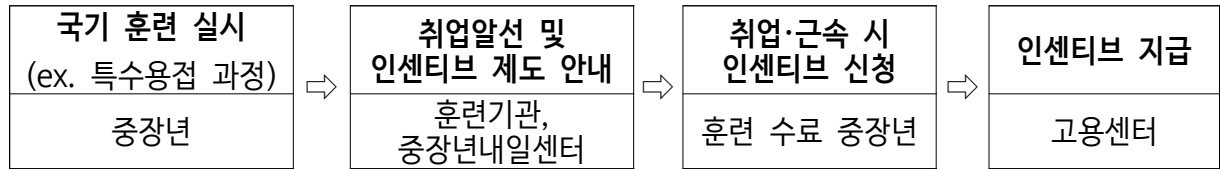
따라서 일손부족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안정적 재취업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자 유인만이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등에 따른 노동수요자 유인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사업 참여 조건이 ‘훈련·일경험 수료자’로 한정되어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동 사업의 사업대상은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중장년 고용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 일경험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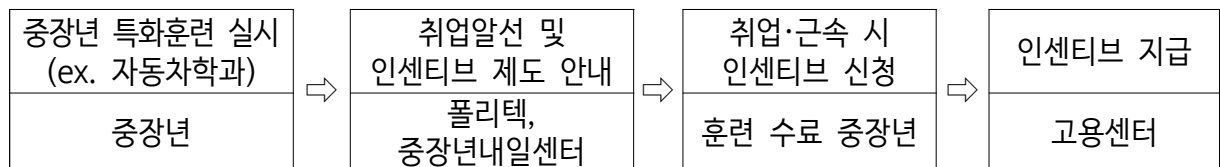
① 국기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금속·동력·기계·전기·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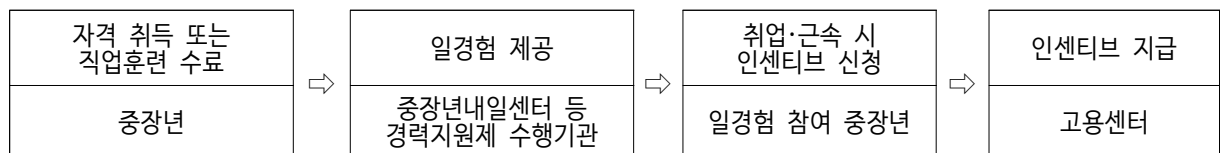
②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훈련

- 반도체·바이오·자동차 등 **지역 인력수요와 연계**하여 만 40세 이상 미취업·영세 자영업 등 중장년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 **이·전직 지원**

③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경력지원제

- 사무직 등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 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이수한 **만 50세~65세 중장년**에 1~3개월간 기업에서 직무교육·현장직무 수행 등 **일경험의 기회 제공, 경력전환형 재취업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지원대상 선정이 간명해지고, 정책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일 시스템 내에서 관리됨에 따라 성과관리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측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취업의지가 있더라도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음.

물론, 동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1,000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참여 요건을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의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시장에서 재취업 기회를 찾는 대다수의 직업 훈련 비참여 중장년층이 사업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⁴⁴⁾,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업 간 연계는 강화되나 중장년 고용정책·사업의 효과가 체계 내에서만 순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외부 취약계층의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업종별 근로환경 개선과 기업 참여 유인을 병행하는 구조적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상자의 참여 경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책효과가 제도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4)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은 3~6개월 가량의 훈련기간을 요구한다는 점도 해당 프로그램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경계선지능청년지원(일반회계, 1343-30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신규, 보조)은 경계선지능(IQ 71~84)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회계연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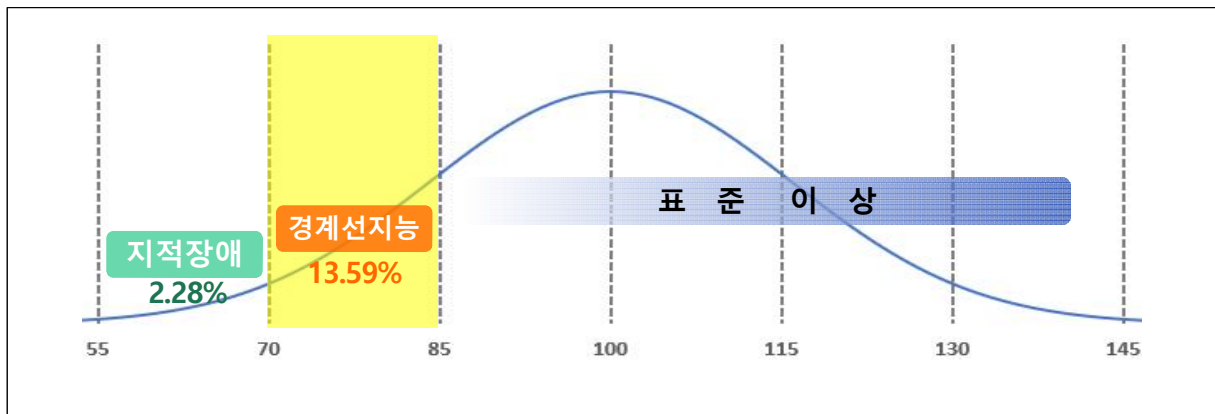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25.7)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집행액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	-	260	26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 효과적인 사업 노하우 축적을 위한 사업방식 개선 필요 등 〉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란 통상 71~84 사이의 지능지수로 대표되며, 지능지수의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 인구의 13.59%가 이에 속하며⁴⁵⁾,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⁴⁶⁾.

[지능지수의 정규분포 곡선]



*자료: 교육부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2024.7.3.) 중 별첨.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의가 없어서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도 불리우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⁴⁷⁾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음⁴⁸⁾.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의사소통 과정,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과

45) 「지적장애아 교육」(신진숙, 2010)

46) 「(이슈와논점)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 6.)

47)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48)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김용훈, 2023, 발달장애연구(KADD), 27(1), 1-17.)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낮은 지적 기능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경계선 지능인 관련 지원 조례가 확대되고 법안 논의⁴⁹⁾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동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지적기능으로 인지·적응 능력이 제한되나, 법상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존재 고용서비스 지원 수요가 높으나, 학습속도, 정서지원 등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부재
지원 내용	참여자 참여수당(1인 20만원) 및 지자체 사업비(1인 80만원) 지원
사업 방식	① (지자체 선정)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 ② (참여자 발굴) 경계선 지능 청년(20~39세) 발굴 ③ (프로그램 운영) 상담, 지역 및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④ (사후관리) 취업 희망 시 국취,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지자체 선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평가·정산 고용부 ⇒ 지자체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고용부
예산안	2억 6,000만원(국비 80% 보조)

*자료: 고용노동부

49) 2025년 10월 현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조승환의원, 2024.7.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허영의원, 2024.8.21.)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해 10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임.

다만, 동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경계선 지능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노하우가 효율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적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원 법령도 미비한 상황⁵⁰⁾이며, 경계선 지능인 관련 재정사업은 일부 확인되나⁵¹⁾, 경계선 지능 아동 등에 대한 정책자료 연구개발, 선별비용 등에 그치고 있는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계선 지능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에 시행된 바가 없는 만큼,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사업은 향후 사업 모델을 정립하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50) 참고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2016년 2월 개정)가 규정되어 있음.

「초·중등 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정서·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51) 교육부 소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일반회계 1031-300)에 경계선지능 현황 및 특성 파악,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등을 통한 지도·지원 방안 탐색 및 정책 제안 등이 포함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일반회계 1331-302)에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진단받은 아동에 대하여 영역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 사례 등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업 이력이나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는 경우 지자체 주도 하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동 사업을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경우 지자체별 사업비가 약 1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어 사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직접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상자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자체 확산 시 표준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매뉴얼과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계선지능 청년의 특성과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무적응훈련·심리상담·사회성 향상 등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은 상담, 지역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등 1개월 가량 운영되는 단기 체험 중심 사업으로 보임.

동 사업의 취지가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일회성 참여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직업훈련·일경험 등 고용노동부 현행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정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경우 장기직업훈련이나, 고용연계형 인턴십, 고용유지 모니터링까지 단계화된 모델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향후 사업 추진 성과점검을 통해 중장기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중기재정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업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사업 연장 및 정규화 여부와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중요하고, 2024년 국정감사 등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⁵²⁾이 있었던 만큼, 추후 사업 운영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모델을 정립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투입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52)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밈센터),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경계선 지능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을 위해 동 시범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않도록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

2026년 동 기금의 예산안에 따른 기금운영규모는 2조 5,120억 5,400만원으로, 수입항목은 부담금 수납 등에 따른 자체수입이 1조 951억원, 여유자금회수가 6,991억원, 정부내부수입이 7,179억원이며, 지출항목은 사업비가 9,151억원, 정부내부지출 8,000억원, 여유자금운용이 7,079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자체수입	1,095,070	사업비	915,072
부담금	1,012,286		
용자금회수	7,503	정부내부지출	800,000
재산수입	53,733		
기타	21,548	기금운영비	89,063
여유자금회수	699,055	여유자금운용	707,919
정부내부수입	717,929		
계	2,512,054	계	2,512,054

* 자료: 고용노동부

< 면밀한 수입 추계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된 수입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69조⁵³⁾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며, 이외에 여유자금 자산운용·예탁운용 등에 따른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의 수입항목이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동 기금의 실제 수납액과 수입계획액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액이 다소 낮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로, 2023년의 기금 전체 수납액은 2조 960억원으로 총수입 계획액 1조 9,005억원 대비 10%가, 2024년 수납액은 2조 3,044억원으로 총수입 계획액 2조 48억원 대비 15% 초과 수납되었음.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안
	계획액	수납액	계획액	수납액	계획액	수납액 (9월 기준)	
▪ 기금 총수입	1,900,474	2,095,985 (110.3%)	2,004,757	2,304,378 (115.0%)	2,182,936	2,162,947 (99.1%)	2,512,054
▪ 법정부담금 (59-593)	747,106	829,580	843,687	895,365	917,709	862,851	1,012,286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853)	508,988	596,456	501,379	669,526	499,109	554,845	697,898
재산수입	17,165	27,544	22,912	92,033	23,032	109,646	53,733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1,000	3,224	2,463	2,795	2,512	1,973	2,844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16,165	24,320	20,449	89,238	20,520	107,673	50,889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0,784	17,850	12,615	19,161	14,884	18,538	20,189

* 주1) 상기 표 내 각 수입과목은 과소계상 규모가 큰 수입과목을 선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각 수입과목의 합은 기금 총수입액과 다름.

주2) 상기 표 수입과목의 주 재원은 다음과 같음

- 법정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수납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 회수
- 기타재산이자수입: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탁운용에 따른 수입
- 기타경상이전수입: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출연금 집행잔액, 지원금 회수액 등

* 자료: 고용노동부

수입과목별로는 주 재원인 법정부담금은 최근 약 800억원, 5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2024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은 1,68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외에 기타재산이자수입이나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기타경상이전 수입 등도 상당한 규모의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음.

한편,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금 전체 총수입 계획안은 2조 5,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액됨에 따라 일부 수입과목의 추계액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수입과목은 여전히 과소추계된 것으로 보임.

가령,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수입(이하 “재산수입”)으로 볼 수 있는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⁵⁴⁾의 2026년 계획안은 각각 28억 4,400만원, 508억 8,900만원으로 총 53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재산수입은 1,096억 4,600만원으로 2025년 계획액 230억 3,200만원 대비 376%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2026년 계획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⁵⁵⁾하고 있어 재산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재산수입에 관한 계획안은 다소 낮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⁵⁶⁾.

또한,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2026년 계획안이 20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수입과목에는 장애인고용부담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54)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단기금융상품(MMF 등)의 이자수입이며,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비통화금융기관 상품운용에 따른 수입으로 여유자금 중 장기 투자성 자산(장기투자증권, 대체상품 등)에 의한 수입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단기 금융상품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자금운용, 유동성 확보 등 자금관리 목적으로 운용되며,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장기투자증권 등은 운용기간이 비교적 길고 경우에 따라 변동수익이 발생하는 투자로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운용됨.

5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계획액 기준 2023년 4,524억원(집행액 6,288억원), 2024년 4,991억원(집행액 7,678억원), 2025년 5,448억원(7월 기준 집행액 7,004억원), 2026년 7,070억원임.

56)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산수입의 경우 적립금 규모 및 목표수익률 등 고려하여 계획을 산출하였으나, 2024년 예치금 회수액 증가와 금융시장 호조(특히 해외주식)에 따른 수익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환경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최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체금도 늘어남에 따라 수납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2025년 9월 기준 수납액 역시 2025년 계획액 대비 25% 초과 수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금은 그 운용상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수입액이 과소계상되면 그에 따라 지출액도 과소계상되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재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의 효과적 운용에 일부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⁷⁾.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금의 수입액을 계획할 때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초과수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7) 최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초과수입분은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기금사업 발굴 노력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⁵⁸⁾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관리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 기금의 2026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주요사업비는 1조 41억 3,500만원으로, 전체 기금운영규모 2조 5,120억 5,400만원의 40.0% 수준으로 그치고, 전체 재원의 60%는 정부내부지출⁵⁹⁾이나 여유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주요사업비	766,268(40.9)	847,783(44.6)	905,348(45.2)	937,196(42.9)	1,004,135(40.0)
정부내부지출	500,320	600,000	600,000	700,000	800,000
여유자금운용 등	607,988	452,691	499,409	545,740	707,919
계	1,874,576	1,900,474	2,004,757	2,182,936	2,512,054

* 주: 당초 계획액 기준이며, 괄호 내 비율은 구성비임

* 자료: 고용노동부

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민간 3.1%, 공공 3.8%)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부과하고 있음.

59) 정부내부지출은 정부 내부 기관 간 이루어지는 재정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 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지출형태를 말함.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은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정부내부거래(예탁금 지출 및 회수)를 하고 있음.

이는 2026년도 기금계획안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최근 연도별 주요사업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요사업비의 비중은 2022년 40.9%에서 2024년 45.2%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42.9%, 2026년 40.0%로 다시 낮아진 것이며,

다른 유사한 규모로 운용되는 사업성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나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성 기금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기금 등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가장 낮음.

[2026년도 유사 규모의 사업성 기금별 주요사업비 비중(계획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 규모(A)	주요 사업비(B)	주요사업비 비중(B/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12,054	1,004,135	4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48,050	2,521,112	82.7%
농지관리기금		2,780,209	2,662,181	95.8%
국민체육진흥기금		① 3,459,040	1,690,694	48.9%
기후대응기금		2,905,685	2,561,474	88.2%
대외경제협력기금		2,379,711	1,975,758	83.0%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진흥기금	541,905	267,895	49.4%
	임금채권보장기금	896,862	848,050	94.6%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반면, 동 기금의 2024년말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940억원(8.3%) 증가한 1조 2,2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증가한 여유자금 규모는 총 3,19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임.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유자금 규모 (연말 기준)	910,105	967,341	1,099,564	1,105,144	1,135,584	1,229,552

* 자료: 고용노동부

아울러, 동 기금은 매년 수입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초과수입분이 발생하고 있는데⁶⁰⁾, 이러한 초과수입분은 모두 여유자금으로 활용됨에 따라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적정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보임⁶¹⁾.

한편, 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4.9%에서 2022년 35.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다시 2024년 33.8%로 낮아지는 등 장애인 고용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사업 집행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보임.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 자료: 연도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경제활동 인구 조사(통계청)

60) 동 검토보고서 123p. 참조

61) 2024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준치평가에서도 동 기금의 중기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최대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상태로 진단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계획안의 주요 사업비 비중은 최근 회계연도 기금계획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 장래 지출 수요 등 여유자금을 축적할 명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부과대상자 확대·의무고용률 상향 등 제도적 요인⁶²⁾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기금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최근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사업 중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2) 장애인 고용의무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최초 시행된 1991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였으나, 2025년 현재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고용노동부는 2029년까지 민간 3.5%, 공공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임.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됨에 따라 부담금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됨.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본예산 기준, 5,801억 6,100만원) 대비 471억 6,400만원(8.1%) 증액된 6,27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frac{(B-A)}{A} \times 100$
		본예산(A)	집행액 (‘25.7)			
▪ 내일배움카드(일반)	577,838	580,161	502,525	627,325	47,164	8.1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498,116	436,021	541,313	43,197	8.7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5,499	478,116	419,245	521,313	43,197	9.0
-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0,000	16,776	20,000	-	-
· 돌봄서비스훈련	15,707	33,100	22,464	29,440	△3,660	11.1
· 일반고 특화훈련	48,818	45,557	41,651	55,383	9,826	21.6
· 평생크레딧	31,576	-	-	-	-	-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3,959	-	-	-	-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1,300	900	720	-	△900	(순감)
· 운영비 등	979	2,488	1,669	1,189	△1,299	△52.2

* 자료: 고용노동부

〈 돌봄서비스 훈련사업 및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훈련인원 취업의 고용형태 등 후속 관리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화훈련인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훈련비 지원 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등이 있음.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참여자 수와 취업자 수를 통계 관리함.

그런데 훈련사업의 결과 양성된 인력이 해당 분야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경우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훈련 종료 후 6개월 시점에서 집계한 동일직종 취업률이 2023년 20.7%, 2024년 36.5%로,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훈련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일 직종으로 취업하지 않고 있음.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동일 직종 취업률]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취업률	18.9	16.7	15.4	20.7	36.5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훈련 종료 후 6개월 시점에서 취업률을 집계한 이후의 고용 유지 기간, 1년 뒤 고용유지율 등 취업자들의 동일 직종 장기종사 여부 및 기간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고, 2024년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제도가 개편되어 2026년 하반기부터 집계할 예정이라고 함.

한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자 수, 6개월 고용유지율, 1년 고용유지율을 확인하고 있는데, 수료 후 취업률은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에 비하여 높은 70% 내외의 수치이나 6개월 및 1년 고용유지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남.

[2020~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참여자 수 ¹⁾	7,102	6,917	6,815	5,544	5,804
중도탈락자 수 ²⁾	761	652	788	664	577
수료자 수 ³⁾	4,973	4,766	4,533	3,453	3,445
취업자 수 ⁴⁾	3,317	3,454	3,194	2,341	2,447
수료율(%) ⁵⁾	70.0	69.0	66.5	62.3	59.4
취업률(%) ⁶⁾	66.7	72.5	70.5	67.8	71.0
고용유지율(6개월)(%) ⁷⁾	50.1	49.3	48.6	44.3	-
고용유지율(1년)(%)	45.9	47.4	49.2	49.5	-

* 주 1) 참여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훈련실시인원

2) 중도탈락자 수: 훈련시작일 기준, 중도탈락인원

3) 수료자 수: 훈련종료일 기준, 수료인원

4) 취업자 수: 수료자 기준, 훈련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훈련생 수

5) 수료율(%): [수료자 수/참여자 수]×100

6) 취업률(%): [취업자 수/수료자 수]×100

7)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자 수/취업자 수)×1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처럼 돌봄서비스 훈련사업의 취업률이나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것은 취업 연계 자체가 불충분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일단 취업자 통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 형태가 단기계약의 형태이거나 취업처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등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는 참여자 및 취업자 수는 통계관리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 훈련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훈련사업과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공통으로 취업 시 고용형태 등 다른 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함.

또한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의 경우 2025년 전국 각지에서 391개의 훈련과정이 7,165명의 특화훈련생을 위하여 지원되는데, 향후 적합훈련과정의 심사·선정 및 훈련생 모집·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서라도 훈련생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고용형태 등의 여러 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요컨대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인 돌봄서비스 훈련사업,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장기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시 고용형태 등 자료를 함께 관리하여 성과평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포상금의 적정소요 반영 필요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운영비 등의 2026년 예산에는 포상금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는 2023년 예산 이래로 매년 예산에서 동일한 수치임.

포상금은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함.

[포상금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부 정 행 위	포 상 금 액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100만원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용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4.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제2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제3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 ^[제4호])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마다 50만원
6.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행위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7.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다.	

그런데 포상금은 예산 5,000만원 중 2023년 150만원, 2024년 35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2025년에도 7월말 기준 1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실제로 2023년 및 2024년 부정행위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체조사로 적발한 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적발된 45건 중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였고,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적발된 50건

중 신고로 적발된 사례 역시 3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결과 포상금 지급액은 2023년 150만원, 2024년 350만원에 불과하였음.

[부정행위 적발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원)

부정 행위	2023년		2024년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액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법 제16조제2항제1호)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법 제16조제2항제2호)	5 (자체조사)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2항제2호)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법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제3호)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	-	-	-	-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법 제16조제2항제3호)	12 (자체조사)	-	45 (자체조사 42, 신고 3)	1,500,000 (3건)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	18 (자체조사 16, 신고 2)	1,500,000 (2건)	50 (자체조사 47, 신고 3)	2,000,000 (3건)

* 자료: 고용노동부

비록 포상금 지급 기준 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등에는 그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기는

하나, 최근 3년간 해당 항목의 부정행위가 신고를 계기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 훈련과정당 50만원, 100만원의 정액으로 정해진 포상금액만이 집행되었으며 그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포상금 예산의 편성에 있어 적정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실]

(1) 상생협력 확산지원(일반회계, 2031-301)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2024년~, 직접수행, 위탁, 보조)은 직무 분석 등에 기반한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 등을 개발·배포하는 상생임금 확산지원 사업과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사 갈등 예방·관리, 노사 협력 등을 지원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을 내용으로 함.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900만원(31.7%) 증액한 11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상생협력 확산지원	20,415	8,542	5,552	11,251	2,709	31.7
· 상생임금확산지원	9,712	5,918	3,549	7,818	1,900	32.1
· 상생연대형성지원	5,000	-	-	-	-	-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2,742	2,624	2,003	3,433	809	30.8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2,961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이행을 제고 및 표준모델 확산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상생임금 확산지원’에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지원’ 사업은 업종별로 각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6억원 증액된 64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년 3개 업종에 64개 기업, 2025년 10월말 기준 4개 업종에 43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임.

[2024 · 2025년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사업 위탁 현황]

구분	업종명	위탁기관	참여기업 수	위탁액
2024년	조선업	한국생산성본부	20개	2,000백만원
	자동차부품업	에프엠어소시에이츠	24개	2,000백만원
	석유화학업	삼정회계법인	20개	2,000백만원
	소 계		64개	6,000백만원
2025년	조선업	한국생산성본부	10개 / 총 10개 예정	980백만원
	자동차부품업	에프엠어소시에이츠	10개 / 총 10개 예정	960백만원
	바이오산업	삼정회계법인	11개 / 총 12개 예정	1,320백만원
	IT산업	시애틀컨설팅그룹	12개 / 총 12개 예정	1,040백만원
	소 계		43개 / 총 44개 예정	4,300백만원*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48억원이며, 5억원은 교육자료, 매뉴얼 제작, 사업평가 등으로 연내 추가 집행할 계획임.

자료 :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목표는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업종의 표준임금모델안을 도출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표준임금모델안 도출 과정에서 개별 사례 수집을 위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하고 있는바, 컨설팅 결과가 업종 내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선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위 목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첫째, 컨설팅 제공 기업의 컨설팅 결과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 동 사업에 참여한 64개 기업 중 2025년 현재까지 컨설팅 결과를 이행 완료한 기업은 7개소에 불과하며, 13개소는 이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44개소는 일부만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의 컨설팅 이행 현황]

업종명	이행완료	일부이행 (이행중)	검토 중	합 계
조선업	-	20개소	-	20개소
자동차부품업	5개소	7개소	12개소	24개소
석유화학업	2개소	17개소	1개소	20개소
합 계	7개소	44개소	13개소	64개소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과의 협의 과정

을 거쳐야 하고, 기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모든 기업이 컨설팅 결과를 완전히 이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사업은 기업당 평균 컨설팅 지원 비용이 약 1억원으로, 유사한 컨설팅 사업인 ‘일터혁신 상생컨설팅’⁶³⁾이 임금체계 관련 컨설팅을 기업당 약 850만원 가량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면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이행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컨설팅 결과의 이행 여부를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⁶⁴⁾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표준 임금체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사업을 통해 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등 3개 업종의 임금체계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2025년 현재까지 도출된 개선안의 확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별 확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

63) 일반회계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 424억 5,600만원이 편성됨.

6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20%,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음.

사례 발굴, 기업 설명회, 온·오프라인 상담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나, 사업 2년차 마무리 단계인 현재까지 사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 확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도출된 표준 임금체계 모델이 실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종별 확산 전략을 구체화한 2026년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임금체계 확산 관련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2) 취약노동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취약노동자지원’ 사업(2025년~, 직접수행, 보조 등)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현행 노동관계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9,400만원(7.5%) 감액한 14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취약노동자지원	-	15,989	10,272	14,795	△1,194	△7.5
· 취약노동자 참여· 소통 활성화 지원	-	4,446	3,565	2,248	△2,198	△49.4
· 현장밀착형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	-	-	1,325	1,325	순증
· 노무제공자 미수 금 회수 지원	-	-	-	200	200	순증
·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	-	2,063	1,103	2,150	87	4.2
· 취약노동자 상생 복지지원	-	6,632	3,380	-	△6,632	순감
· 취약노동자 보호	-	2,848	2,223	3,292	444	15.6
· 노동단체 및 노사 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	-	5,580	5,580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 사업의 예산규모 적정성 및 사업수요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보수 미지급 등 법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미수금 회수 법률구조 비용으로, 2026년 신규 사업비용 2억원이 편성되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미지급금 관련 소송을 지원할 계획인바, 건당 약 40만원의 단가로 약 500건의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현행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도 실시되고 있음.⁶⁵⁾⁶⁶⁾

65)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6. (생략)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채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지원에 한정한다.

8. (생략)

66) 임금채권보장기금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사업의 최근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건, 억원)

연도	집행액	지원실적		
		인원수	사건수	구조금액
2025.7	83	48,531	37,001	3,814
2024	139	73,958	54,878	5,587
2023	133	61,394	44,813	4,738
2022	140	61,757	43,078	4,527
2021	261	116,464	77,667	8,304
2020	282	137,637	90,174	10,099
2019	282	162,977	106,249	11,188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동 예산안은 이러한 노무제공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 첫해 약 500건의 소송 지원으로 2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나, 사업수요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예산을 통해 2022년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의 대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플랫폼종사자 대상 법률구조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구조대상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는 제외) *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구조대상사건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및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증빙서류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일감 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화면 출력물) 또는 계약서, 가입비 납부내역, 보수 입금내역 등
지원내용	법률상담, 변호사·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 지원 (전액 무료)

자료 :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지침)

그러나 동 사업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첫 해인 2022년 7건의 소송을 지원하고, 2023년 4건의 소송을 지원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7만원의 소송비용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플랫폼종사자 대상 법률구조사업의 연도별 사업실적]

구분		2022	2023	2024~2025.9.
구조결정	건수	7건	4건	-
	금액*	2억 7,989만원	434만원	-
집행금액	소송비용	3만 4,200원	107만 5,600원	-
	변호사보수비용	29만 6,000원	96만원	-
	합계	33만 200원	203만 5,600원	-

*구조결정 금액 : 민사소송 소가 금액으로 금전채권자의 경우 채권 원금
자료 :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노무제공자 분쟁예방 지원단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2025년 9월까지 31건⁶⁷⁾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노무제공자 법률서비스 관련 사업의 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법률구조사업의 경우 소송이 종료된 후 소송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로서, 소송기간을 고려할

67) 총 10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를 설치한 바, 이 중 2025.6. 이후 개소한 4개소(김포·천안·울산·군산)의 경우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나머지 6개소의 분쟁상담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음.

서울	평택	청주	부산	대구	광주	합계
15건	1건	6건	7건	0건	2건	31건

때 접수된 사건의 소송비용을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구조임.

이를 종합할 때 고용노동부의 계획과 같이 소송비용 2억원이 2026년에 전액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지원물량 500건이 조기에 접수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사업 첫해라는 점과 과거 사업의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전액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6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사업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3)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일반회계, 2031-305)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사업(2021년~, 출연)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300만원(12.8%) 증액한 211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9,654	18,763	15,636	21,166	2,403	12.8
· 고용노동교육	7,967	7,967	7,563	8,267	300	3.8
·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교육	2,729	2,929	2,780	2,929	0	0.0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	-	-	900	900	순증
· 정보시스템구축	1,594	1,594	1,513	1,534	△60	△3.8
· 노후건축보수	694	500	474	638	138	27.6
· 지역거점센터운영	443	443	421	443	0	0.0
· 인건비	8,837	9,106	5,312	9,425	319	3.5
· 경상비	1,166	1,147	669	1,141	△6	△0.5
· 수입	△3,776	△4,923	△3,096	△4,111	812	16.5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사업을 편성한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사업의 2026년 예산 9억원은 사업의 1단계인 교육 인프라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로, 콘텐츠 개발(6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전문강사 양성(1억원), 협의체 구축(1억 8,000만원) 등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6년 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한 후 2027년부터 청소년기·성인기·중장년기의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사업 개요]

- ☐ (개요) 노동존중 및 모든 사람들의 일터권리 보장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노동교육 실시
- ☐ (교육대상) 청소년, 성인, 중장년층 등 전 국민
- ☐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국민 인식 개선 등
- ① 1단계: 교육 인프라 조성(2026년)
 - (콘텐츠 개발) 청소년, 직장인, 퇴직예정자, 재취업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 (전문강사 양성) 대상·지역별 전문강사(노무사, 관련전문가 등) 풀 구축, 학교 노동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고 교원 강사 양성
 - (협의체 구축)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을 아우르는 중앙(고용부 본부 주관)·지역(지방청 주관) 협의체 구축*, 추진상황 등 점검
- ② 2단계: 교육 실시 및 국민 인식 개선(2027년 ~)
 - (청소년기) 교육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 직업계고, 대학생에게 적합한 교과목을 단계별 편성, 필수교육으로 정착화

- (성인기) 대상별 현장지원교육 및 e-러닝 화상 강의 등을 활용한 사업장 내 노동 교육 활성화
- (중장년기)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및 재취업자(고령근로자) 대상 연령·경력·퇴직 사유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공모전, 대중매체,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노동교육 필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노동교육 참여문화 정착

자료 : 고용노동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전문강사 양성 예산 편성 타당성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사업비 중 1억원을 전문강사 양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노동교육을 위해 노무사 및 관련 전문가, 초·중·고 교원 등 200명에게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거쳐 강사 등록 및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한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기존 고용노동교육 사업 예산으로 ‘전문강사양성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25년 예산과 동일한 4억 9,700만원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노동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과 학교 노동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노동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노동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으로 171명을 교육하고, 학교노동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으로 교원 108명, 전문강사 124명을 교육하여 총 4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전문강사양성교육 실적]

연도	노사관계전문강사 양성교육	학교노동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합 계
		교원	전문강사	
2021	100명	296명	315명	711명
2022	210명	274명	179명	663명
2023	247명	91명	210명	548명
2024	171명	108명	124명	403명
2025.9.	144명	100명	153명	397명

자료 :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강사양성교육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은 교육원의 교육 과정에 출강시키기 위해 교육원의 표준강의안을 전수하는 과정이고, 교원에 대한 교육은 사회·진로교과 담당 교사 등이 고용노동 관련 내용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은 새로운 교육 전달체계 구축, 교육 범위와 내용, 기간에서 기존 교육과 차별화가 필요하여 별도의 강사 양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첫째, 고용노동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은 현재 실시 중인 청소년·청년교육, 노사권리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향후 생

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과 기존 교육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 사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현재 실시 중인 교육원의 교육 과정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에 흡수·통합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강사교육 예산으로 기존 교육과정을 위한 강사를 교육하기보다는 동 예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위한 강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에 활용될 예정인 교육콘텐츠가 2026년 말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에 활용될 강사에 대한 교육은 동 콘텐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교육의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0종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으로, 동 콘텐츠 개발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⁶⁸⁾, 관련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콘텐츠는 2026년 말 경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교육콘텐츠의 내용을 반영한 표준강의안 등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강사에 대한 교육은 2026년 말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즉, 기존 강사교육 예산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의 강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의 시기 또한 2026년 말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생애주기

68) 고용노동부는 콘텐츠 1종당 6,200만원의 단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 단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책임연구원 월 3,705천원×6개월×2명) + (연구원 월 2,842천원×6개월×1명)

별 맞춤형 노동교육의 전문강사 양성 2026년 예산 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4) 근로감독역량강화(일반회계, 3032-306)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근로감독역량강화’(1973년~, 직접)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지원, 근로감독활동지원 등 근로감독 인프라 및 근로기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감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8억 200만원(314.0%) 증액한 55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근로감독역량강화	12,783	13,311	7,730	55,113	41,802	314.0
· 근로감독역량강화	1,030	1,063	678	1,106	43	4.0
· 근로감독활동지원	11,753	12,248	7,053	12,848	600	4.9
· 근로감독제도혁신	-	-	-	41,159	순증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근로감독제도혁신’은 중앙·지방정부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 추진 및 ILO 수준의 근로감독 확대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및 감독 물량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인프라 및 여건 마련을 위해 임차 사

무공간 보증금, 업무용 전산·사무장비, 교육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41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신규 근로감독관을 위한 교육용역비 92억 1,600만원,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임차료 43억 700만원, 수사활동비 29억원 등으로 구성됨.

[2026년도 근로감독제도혁신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구분	내용	비목	산출식
교육	교육비 (용역비)	일반용역비 (210-14)	1,113명 × 690천원 × 12주 = 9,216백만원 * 중앙정부 813명 + 지방정부 300명
	교육여비	국내여비 (220-01)	813명 × 32천원 × 40일 = 1,041백만원
출장	출장여비	국내여비 (220-01)	31,420개소 × 32천원 × 2명 = 2,011백만원
점검복	점검복 지원	피복비 (210-03)	813명 × 420천원 = 341백만원
사무공간 마련	사무실 중개 수수료	일반수용비 (210-01)	6백만원 × 58개소 = 348백만원
	임차보증금	무형자산 (440-00)	80백만원 × 58개소 = 4,640백만원
	사무실 임차료	임차료 (210-07)	74,250천원 × 58개소 = 4,307백만원
	이사비	일반수용비 (210-01)	9,375천원 × 58개소 = 544백만원
	건축·통신 등 공사비	공사비 (420-03)	118백만원 × 58개소 = 6,844백만원
	회의 탁자 등 사무가구	자산취득비 (430-01)	34,401천원 × 58개소 = 1,995백만원
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4,375천원 × 58개소 = 1,414백만원
	사무실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625천원 × 58개소 = 326백만원
	경비용역	관리용역비 (210-15)	1,800천원 × 58개소 = 104백만원
	소모품	일반수용비 (210-01)	1,987천원 × 58개소 = 115백만원
개인 사무용품	소모품 구매	일반수용비 (210-01)	700천원 × 813명 = 569백만원
	개인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자산취득비 (430-01)	4,450천원 × 813명 = 3,618백만원

구분	내용	비목	산출식
점검감독 수사차량	수사차량 임차	임차료 (210-07)	750천원 × 12개월 × 81대 = 729백만원
	수사차량 유류	유류비 (210-08)	100천원 × 12개월 × 81대 = 97백만원
수사활동	수사활동비	특정업무경비 (250-03)	250천원 × 9개월 × 1,300명 = 2,900백만원

〈 법개정을 전제로 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교육비 예산안 편성 〉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총 3,025명의 근로감독관⁶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ILO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 신규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도 예산안에 ‘근로감독제도혁신’ 사업을 통해 신규 증원된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에 동 사업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소속 813명의 신규 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 300명 총 1,113명에 대한 교육비(210-14목)를 편성하고 있음.

69)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①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기준근로감독관’)과 ②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①「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과 ②「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비(용역비) 예산안 산출근거]

○ 1,113명* × 690천원 × 12주 = 92억 1,600만원
* 중앙정부 813명 + 지방정부 300명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추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300명에 대한 근로감독 교육비용을 포함하여 교육비 총 9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이때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근로감독관 300명의 교육비용은 법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2026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속되어 있고,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심문)할 수 있다.
-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19. 생략
-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정부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⁷⁰⁾ 법률 개정 여부에 맞추어 사업 추진 여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⁷¹⁾

70) 참고로,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3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778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38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781호)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71)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2025년 내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5)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기금, 1345-350)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역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2017년~, 직접, 위탁)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도입·활용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 계획액은 전년 대비 485억원(12.4%) 증액한 4,39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계획액(A)	집행액 (’25.7)			
■ 고용안정장려금	339,913	390,894	209,660	439,394	48,500	12.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4,293	35,826	17,543	58,362	22,536	62.9
· 정규직전환 지원	9,599	2,500	1,358	6,900	4,400	176.0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2,223	15,931	10,398	14,644	△1,287	△8.1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93,798	336,637	180,361	359,488	22,851	6.8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내역사업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 276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주 4.5일제 자발적 추진을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300인 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⁷²⁾⁷³⁾이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실시 인원별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전면도입형(주 4.5일제 도입)’과 ‘부분도입형(주 2시간 단축 또는 전체 노동자 절반 미만 주 4.5일제 도입 등 부분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구분하여 6개월간 지원하고, 주 4.5일제 도입 전 3개월 평균 노동자 수 대비 증원 시 6개월간 증원 인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워라벨+4.5 프로젝트 지원사업 개요]

구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지원
		부분도입형	완전도입형	
지원요건		주 2시간 미만 단축 또는 전체 노동자 절반 미만 주 4.5일제 도입 등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 도입	주 4.5일제 도입 전 3개월 평균 노동자 수 대비 증원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1인당 월 30만원	1인당 월 50만원	1인당 월 80만원
	50~300인	1인당 월 20만원	1인당 월 40만원	1인당 월 60만원
지원기간		6개월		6개월
지원한도		50~300인 사업장은 100명 한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원 지원)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고용노동부는 ①생명·안전 관련 업종, ②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자료 : 고용노동부

72)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3)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500명 이하~100명 이하 규모로 각각 정하고 있음.

〈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수요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60개소에 개소당 90명을 6개월 지원하고, 50인 미만 기업 100개소에 개소당 45명을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 하되,

신규채용 지원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18개소에 개소당 15명을 6개월 지원하고, 50인 미만 기업 42개소에 개소당 5명을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즉, 고용노동부는 2026년 동 사업을 통해 160개 기업의 근로자 9,900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60개 기업에서 480명의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 편성 근거]

☐ 도입운영 지원

<50~300인 미만> 60개소 × 90명 × 35만원(평균지원단가) × 6개월

<50인 미만> 100개소 × 45명 × 45만원(평균지원단가) × 6개월

☐ 신규채용 지원

<50~300인 미만> 18개소 × 15명 × 60만원 × 6개월

<50인 미만> 42개소 × 5명 × 80만원 × 6개월

☐ 운영 및 인식확산 : 25억원

그러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규모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기간을 최대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타 장려금 사례 및 주 4.5일제 도입 유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세부사업 내 여러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워라벨+4.5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제외한 다른 장려금 및 지원금의 경우 최대 지원기간이 1년 또는 1년 이상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내 장려금 및 지원금 사업 개요]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	최대 1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최대 1년
워라벨+4.5 프로젝트 지원	노사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추가 지원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기업 지원	최대 1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사업주 지원	최대 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기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최대 1년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및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자료 : 고용노동부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인사노무관리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도입에 소극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가량의 지원을 통해 적은 비용 부담으로 제도를 운영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임.

특히 주 4.5일제 도입은 사업장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과 같이 개인 사유에 의한 한시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아닌바, 한 번 제도를 도입하면 주 5일제로의 회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계획과 같이 다른 장려금보다 짧은 지원기간을 설정할 경우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어려울 수 있겠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 기간 설정 시 타 장려금 제도와 동일하게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예산 편성 근거를 고려할 때 개소당 평균 지원 인원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개소당 지원 인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개소당 평균 90명, 50인 미만 사업장 1개소당 평균 45명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개소당 평균 종사자수는 약 19명 수준⁷⁴⁾으로, 고용노동부가 예상한 50인 미만 사업장 개소당 45명보다는 적은 수준임.

또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수의 67% 가량을 차지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종사자 수가 약 68명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0인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개소당 90명의 지원계획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음.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대비 개소당 지원계획 비교]

(단위 : 개, 명)

구 분	50인 미만(10인 미만 제외)			50인 이상 300인 미만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사업체수	293,097	249,825	43,272	27,348	13,603
종사자수	5,506,018	3,879,563	1,626,455	1,865,175	2,170,120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18.8	15.5	37.6	68.2	159.5 (100인까지 지원)
사업체당 평균 지원인원(계획)	45인			90인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를 재구성

74)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평균 5.6명까지로 감소하나, 사업의 주 목표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이는 제외함.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부 직무나 공정 등에 한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바, 이를 고려할 때 개소당 지원인원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가 목표하고 있는 160개소 사업장 발굴 및 지원으로는 2026년 기금계획이 전액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는바, 목표 지원 사업장 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발굴 및 도입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수행 중인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2026년 예산안 424억 5,600만 원)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 관련 컨설팅을 제공받은 사업장이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과 권역별 민간 수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업장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4.5일제를 한 번 도입하면 주 5일제로의 회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데 반해 6개월간의 지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전액 보전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첫째 기업의 사업 수요가 높지 않을 수 있는바, 사

업 수요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동 지원금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기업 등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우대지원 방안⁷⁵⁾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도입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강화하며, 나아가 사업 초기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과 요건 등 제도 설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기업지원금 예산비목을 기타보전금으로 변경할 필요 〉

위라벨+4.5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 276억 4,700만원은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된바, 민간위탁사업비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⁷⁶⁾으로 정의됨.

그러나 동 사업비의 경우 노사발전재단으로의 위탁을 통해 수행될 사업장 발굴·도입 지원 및 홍보 등의 예산 25억원 외 대부분의 사업비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주 4.5일제 도입의 촉진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일부 비용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75) 현재 고용노동부는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지원금을 1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임.

7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것으로서 국가사무의 위탁이라는 민간위탁사업비의 비목 성격과 맞지 않음.

또한 이를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이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나, 사업장별로 주 4.5일제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월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그 성격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노사발전재단의 사업관리 관련 사업비를 일괄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집행하게 될 경우, 사업관리비와 기업 지원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시 이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안정장려금 내 타 장려금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실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유연근무제 장려금 등은 ‘기타보전금(310-04)’ 비목⁷⁷⁾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임.

7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타보전금(310-0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이를 종합할 때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기타보전금(310-04)’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바,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25억원)를 제외한 기업지원금 251억 4,700만원은 기타보전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음.

(6)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

〈 임금채권보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의 지급,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 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임.⁷⁸⁾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이고, 주요 지출은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용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2026년도 계획안 기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계 기준 전년(당초 기준, 9,142억 2,700만원) 대비 △173억 6,500만원(△1.9%) 감액된 8,968억 6,200만원임.

78)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용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수입액	1,006,157	914,227	914,227	896,862	△17,365	△1.9
기타민간이자수입	1,507	2,519	2,519	3,663	1,144	45.4
기타재산이자수입	4,051	4,720	4,720	2,859	△1,861	△39.4
기타재산이자외수입	46,358	15,103	15,103	21,970	6,867	45.5
가산금	137	153	153	132	△21	△13.7
법정부담금	418,430	430,680	430,680	440,883	10,203	2.4
기타경상이전수입	162,587	198,797	198,797	170,716	△28,081	△14.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7,188	73,759	73,759	73,759	-	-
정부예금회수	243,136	80,942	80,942	125,798	44,856	55.4
전입금	82	82	82	82	-	-
예탁원금회수	100,000	50,000	50,000	-	△50,000	△100.0
예수금	-	57,000	57,000	57,000	-	-
예탁이자수입	2,681	472	472	-	△472	△100.0
지출액	1,006,157	914,227	914,227	896,862	△17,365	△1.9
대지급금지급	727,198	529,346	680,180	746,517	217,171	41.0
무료법률구조지원	13,907	11,509	11,509	11,678	169	1.5
채불청산지원용자	76,918	70,352	78,481	70,635	283	0.4
임금채권정보화	341	341	341	341	-	-
기금운영비	16,440	16,949	16,949	18,879	1,930	11.4
공자기금예탁	50,000	-	-	-	-	-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	969	969	2,565	1,596	164.7
여유자금운용	121,353	284,761	125,798	46,247	△238,514	△83.8

* 자료: 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2019년 이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19년 9,587억 7,700만원에서 2024년 3,472억 6,600만원으로 6년 사이에 △6,115억 1,100만원(△63.8%) 감소하였음. 이는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던 것에 기인함.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2026(안)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401,552	771,064
기금예수금	-	-	-	-	-	-	-	57,000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486,282	850,615
사업비 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476,907	829,171
대지급금 지급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414,418	742,077
수지차(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84,730	△79,551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62,536	262,571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55,984	257,900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	-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6,552	4,671

주1) 수입, 지출은 총계에서 정부예금회수, 예탁원금회수를 차감한 순수입, 총계에서 공자기금예탁액과 여유자금운용규모를 차감한 순지출임

주2) 2019~2024년은 결산액 기준, 2025년은 7월말 기준 결산액임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기금 적립금이 부족함에 따라, 2025년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570억원을 받고 있음. 2026년도 기금 수입계획안에도 570억원의 기금예수금이 편성되어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⁷⁹⁾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이러한 적립금 부족 상황으로 인하여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2023년은 163억 7,700만원, 2024년은 3,396억 3,900만원의 적립금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2025년의 경우 7월말 기준 4,616억 7,100만원이 법정 책임준비금 규모에 미달됨.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적립금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62,536
법정 책임준비금 규모 (n-1년의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부족분	-	-	-	16,377	339,639	461,671

* 자료: 고용노동부

79)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6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규모가 전년(당초 기준, 5,293억 4,600만원) 대비 2,171억 7,100만원(41.0%) 증액된 7,46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늘어난 기금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인 비통화금융기관예치액이 전년 대비 △2,385억 1,400만원(△85.2%) 감소한바 기금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6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집행액 (‘25.7)			
■ 대지급금 지급	727,198 [727,151]	529,346	416,270 [416,096]	746,517	217,171	41.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6,777	280,090	121,127	41,576	△238,514	△85.2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임금채불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대지급금 환수 실적 제고 등 다각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통한 기금 수입 제고가 가능할 것임.

대지급금 지급 내역 및 사업 회수 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지급금 중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금은 3조 7,004억

2,300만원으로 2019년 2조 468억 8,600만원 대비 1조 6,535억 3,700만원(80.8%) 증가하였음. 이때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2024년 30.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대지급금 회수율의 제고를 통한 기금 수입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2019~2024년 대지급금 지급 내역 및 사업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당해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중 미수금	345,663	457,207	398,323	383,623	538,773	565,979
당해년도 대지급금 회수율	24.8	21.1	27.1	28.5	21.6	21.8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648,289
누적 대지급금 회수금액(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97,714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 중 미수금	3,006,671	3,463,878	3,862,201	4,245,824	4,784,598	5,350,575
불납결손액 제외	2,046,886	2,492,176	2,750,155	3,090,740	3,329,359	3,700,423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 (B/A)	34.3	32.8	32.2	31.9	30.9	30.0

주)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은 당해년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액 미납사업주 집중 회수, 사업주 숨은 재산 발굴, 장기미회수채권 회수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고, 회수절차 개선을 위해 2025년 10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 변제금 납부의무 직상수급인 연

대 책임 부과 등을 2026년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분의 환수율 제고 등 기금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대지급금 지급’(1998년~, 직접, 출연)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5,293억 4,600만원) 대비 2,171억 7,100만원(41.0%) 증액된 7,46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집행액 (‘25.7)			
■ 대지급금 지급	727,198 [727,151]	529,346	416,270 [416,096]	746,517	217,171	41.0
· 대지급금 지급	724,207 [724,207]	526,403	414,418 [414,418]	742,077	215,674	41.0
· 채권관리 비용	2,991 [2,944]	2,943	1,852 [1,678]	3,738	795	27.0
· 상습체불사업주 회수관리	-	-	-	702	702	순증

*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

지급금과 ②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 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의 확정판결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요건	대상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확정판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주기	①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 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구기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횟수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자료: 고용노동부

**<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에 앞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최우선변제권 초과 범위에 대한 변제금 회수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대지급금 지급’의 2026년도 계획안을 보면, ①도산 대지급금 1,372억 5,400만원, ② 간이대지급금 6,048억 2,300만원 총 7,420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결산	2025 당초 (A)	2025 추경	2026 계획안 (B)	증감 (B-A)	(B-A)/A
도산대지급금	54,828	42,267	42,267	137,254	94,987	224.7
간이대지급금	669,379	484,136	634,970	604,823	120,687	24.9
계	724,207	526,403	677,237	742,077	215,674	41.0

* 자료: 고용노동부

도산 대지급금은 2025년 당초 계획액(422억 6,700만원) 대비 949억 8,700만원(224.7%)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6년도 하반기부터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임.

[2026년도 도산 대지급금 세부 산출근거]

- ① '26년 상반기 소요액 21,775백만원
 ⇨ 최근 3년('22~'24년) 도산대지급금 평균 지원실적의 50%
 * 6,379명 × 6.827백만원 × 50%

② '26년 하반기 공약이행 소요액 115,479백만원
 ⇨ '24년 도산대지급금 지급사건의 체불액(최종 6개월분 체불임금 반영),
 최근 5년 체불액 평균증감율(6.6%) 반영
 * 203,244백만원 × 1.066² × 50%

* 자료: 고용노동부

이때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안 편성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⁸⁰⁾ 법률 개정 여부에 맞추어 사업 추진 여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률 규정]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80) 참고로, 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621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95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두 개정안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한도를 최종 3년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둘째,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노동관계법률에 따른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초과하는바 추후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변제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채권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변제되도록 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시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대위되는 권

리에는 임금채권등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지급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이때 대지급금을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경우,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한정되어 있는바, 대지급금의 적정 기간 내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우선변제권 외 지급액에 대해서는 변제금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체불임금의 사업주 자체 청산이 어려운 도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별개로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점,⁸¹⁾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⁸²⁾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최우선변제권 외 지급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우선변제권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변제금 회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81) 2024년 30%에 불과함

82) (6) 임금채권보장기금 총괄(p.169) 참고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절감소요 감액 필요 〉

내역사업 ‘채권관리비용’ 계획안은 대지급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드는 소송 비용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29억 4,300만원) 대비 7억 9,500만원(27.0%) 증액된 37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적인 계획안 산출근거는 다음 표와 같음.

[2026년도 채권관리비용 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안)
소제기비용	1,349	1,441
보전처분비용	489	1,315
강제집행 비용	137	131
기타 소송비용	208	197
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760	654
계	2,943	3,738

* 자료: 고용노동부

이때 2025년 10월 26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⁸³⁾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부 채권관리비용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⁸⁴⁾

8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제2213262호

84)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중 국세채납처분 절차 준용 관련 규정]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이러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이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절차를 준용할 경우,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⁸⁵⁾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는 소송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⁸⁶⁾ 이에 따라 채권관리비용도 감소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고용노동부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감소를 인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 시행 전 기존 민사절차로 진행

용도 포함됨.

85) 참고1, 참고2 참조

86) 민사절차에 따른 가압류비용, 소송비용 등이 감소하는 것임. 국세채납처분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고지·독촉비용, 압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나 이는 소송비용 감소분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중인 건에 대해서는 계속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건이 있을 수 있어 소송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민사절차에 따른 가압류비용, 소송비용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이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재산출한 채권관리비용 계획안은 32억 8,900만원임. 이는 상반기 민사절차 시행에 따른 19억 1,400만원, 하반기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에 따른 7억 2,100만원, 2026년 미회수채권위탁수수료 6억 5,400만원으로 구성됨.

[법 개정에 따른 2026년도 채권관리비용 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법 개정에 따른 재산정(안)	구분
상반기 (개정법률 시행 전 민사절차 진행)	○ 19억 1,400만원 - 소제기비용 7억 2,100만원, 보전처분비용 6억 5,700만원, 강제집행비용 1억 7,900만원, 기타 소송비용 3억 5,700만원
하반기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	○ 7억 2,100만원 - 고지·독촉비용 2억 9,000만원, 압류비용 3억 7,200만원, 강제집행 공매수수료 5,900만원
미회수채권위탁수수료	○ 6억 5,400만원
계	32억 8,900만원

주)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산식은 참고 3 참조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채권관리비용 사업비용은 2026년도 정부안 대비 △4억 4,900만원 감소할 예정이므로, 해당 절감소요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준용되는 체납처분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제25조	· 연체금의 징수 근거, 연체금 산정 기간, 부가연체금 등
제26조의2	· 징수우선순위(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등 순)
제27조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서면통지 및 독촉, 연대채무자에 대한 독촉효력 인정 등)
제27조의2	· 납부기한 전 징수(국채·지방세 체납자, 강제집행을 받거나 법인 해산된 경우 등)
제28조	· 징수금의 체납처분(징수금 독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근거
제28조의2	· 법인 합병에 의한 납부의무 승계
제28조의3	·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 승계
제28조의4	· 연대납부의무(공동사업 관계자, 법인 분할 시 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5	·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민법」 준용(연대채무 관련 규정의 일부 준용)
제28조의7	· 국세기본법 준용(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담보제공 관련)
제29조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 사유
제32조	· 서류의 송달 관련 타 법 준용(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42조	· 시효 중단 - 제27조에 따른 통지, 독촉 -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배당요구), 압류

참고 2

민사집행 절차와 국세채납처분 절차 비교

구 분	민사집행 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
관 련 법 률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임금채권보장법, 국세징수법, 보험료징수법(준용규정) 등
업 무 내 용	① 대지급금 지급	① 대지급금 지급
	② 변제금 납부고지 (15일)	② 변제금 납부고지 (30일) - 납입고지 - 독촉
	③ 재산조사	③ 채납처분 승인 (7일) - 재산조사
	④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등) (5일)	④ 재산 보전처분(압류) (1일)
	- 가압류신청서 접수(전자접수) - 가압류 결정(법원) - 가압류 통지서 송부(채무자)	- 압류조서(촉탁서) 작성·송부 * 촉탁과 동시 압류효력 발생 - 압류 통지서 송부(채무자) * 법원에 대한 신청, 심리, 결정 등의 절차 없음
	⑤ 집행권원 확보 (120일)	
	- 제소전 화해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소송수행(변론, 증거·증인 신청 등) - 사건 심리(법원) - 법원 판결 및 집행문 부여 등	*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절차 없음
	⑥ 강제환가 절차(강제집행 이행) (150일)	⑤ 강제환가 절차(공매) 이행 (120일)
소 요 시 간	<290일> 강제집행이 유찰없이 진행될 경우 1회 유찰시마다 15일이상 추가 소요	<158일> 공매가 유찰없이 진행될 경우 1회 유찰시마다 10일이상 추가 소요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 3

법률 개정(안)에 따른 채권관리비용 재산정 내역 (고용노동부 재산정)

'26년 정부(안)	법령 개정(안)에 따른 재산정
○ 채권관리비용: 3,738,000천원 [26년 전체] 가. 소제기 비용: 1,441,451천원 1) 지급명령: 7,395건*83,400원=616,743천원 2) 소송: 2,249건*366,700원=824,708천원 나. 보전처분 비용: 1,314,567천원 1) 부동산: 3,290건*231,300원=760,977천원 2) 자동차: 3,516건*141,100원=496,108천원 3) 채권 등: 411건*139,860원=57,482천원 다. 강제집행 비용: 66건*1,983,716원=130,925천원 라. 기타 소송비용: 196,901천원 1) 변호사 수임료: 19,300,000원*5건=96,500천원 2) 자문변호사료: 3,960,000원*12개월=47,520천원 3) 채권관리 교육비용: 52,881,000원=52,881천원 마. 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505,474,000,000원*2.23%*5.801%=653,893천원	○ 채권관리비용: 3,288,339천원 [26. 상반기] <개정 법률 시행 전 민사절차 진행> 가. 소제기 비용: 720,726천원 1) 지급명령: 3,698건*83,400원=308,372천원 2) 소송: 1,125건*366,700원=412,354천원 나. 보전처분 비용: 657,284천원 1) 부동산: 1,645건*231,300원=380,372천원 2) 자동차: 1,758건*141,100원=248,054천원 3) 채권 등: 206건*139,860원=28,741천원 다. 강제집행 비용: 90건*1,983,716원=178,534천원 라. 기타 소송비용: 356,681천원 1) 변호사 수임료: 19,300,000원*10건=193,000천원 2) 자문변호사료: 3,960,000원*12개월=47,520천원 3) 채권관리 교육비용: 116,161,000원=116,161천원 [26. 하반기] <국세채납처분절차 도입 시행> 마. 고지·독촉비용: 290,213천원 1) 고지: 3,035원*47,823건= 145,143천원 2) 독촉: 3,035원*47,799건= 145,070천원 바. 압류비용: 371,613천원 1) 압류예고: 3,035원* 13,826건= 41,962천원 2) 압류촉탁: 329,651천원 사. 강제집행 공매수수료: 59,400천원 - 59,400천원=33건*수수료(1,800천원) [26. 전체] 아. 미회수채권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505,474,000,000원*2.23%*5.801%=653,893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8) 생활안정자금(용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생활안정자금(용자)’(1996년~, 용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용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용자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914억 6,200만원) 대비 △3억 9,200만원(△0.4%) 감액된 9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집행액 (‘25.7)			
■ 생활안정자금(용자)	118,462	91,462	72,000 [62,668]	91,070	△392	△0.4
· 생활안정자금(용자)	118,462	88,462	72,000 [62,668]	85,475	△2,987	△3.4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	3,000	-	5,595	2,595	86.5

* 자료: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것으로,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총 6종의 용자가 가능함.

각 용자의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이 252만

이하(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 분		대상 및 조건
융 자 대 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노부모부양비 ⑤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⑥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경영상 이유, 개인 사정),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1/2('25년 252만 원) 이하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융 자 한 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원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노부모부양비	• 2천만원 한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⑤자녀양육비	• 2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7세미만 자녀)
	⑥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u>2,000만원 한도</u>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존 융자사업대상자를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에서 중위소득 1/2 이하 근로자로 축소하면서, 그 외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고정금리에 3%p 내에서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대 1,000만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전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

을 신규 추진하였음.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30억원) 대비 25억 9,500만원(86.5%) 증액된 5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비교]

구분	융자	이차보전
목적	결혼, 장례, 치료 등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 보호	결혼, 자녀양육으로 목돈이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보호
대상	중위소득 1/2 이하 취약계층 근로자	① 중위소득 1/2 이하 근로자 ② 중위소득 1/2 초과 2/3 이하 근로자 ③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조건	결혼, 장례, 치료, 자녀 양육 등 생활 필수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결혼, 자녀 양육으로 생활필수자금 소요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도	종목당 1,000만원(혼례비 1,25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①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 1,000만원 한도 ②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500만원 한도
융자금리	1.5%(보증료율 연 0.9% 별도)	금융기관 고정금리에 3%p 이내 보전 * 개인 신용대출 금리(최저 1.5% 초과 ~ 최고 9.5%)에서 3%p 이내 이차보전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율은 최저 1.5% ~ 최고 6.5% 수준임
2026년도 계획안	854억 7,500만원	55억 9,000만원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심사기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기업은행 대출심사기준
담보제공	공단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통한 신용보증	공단 추천, 기업은행 대출심사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2025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한 이차보전금 계획안 감액 조정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하여 5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5년에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을 통해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이자 지원분 25억 9,500만원⁸⁷⁾과 2026년에 새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이차보전액 30억원으로 구성됨.

[2026년도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5,595백만 원
 - = ① '26년 신규 3,000백만 원 + ② '25년 융자잔액 이차보전금 2,595백만 원
 - ① '26년 신규 3,000백만 원 = 융자 재원 1,000억 원 × 이차보전금리 3%
 - ② '25년 융자잔액 이차보전금 2,595백만 원
 - ㉠ 이차보전 추계 전제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금리: 3%
 - 원금상환율(%): ('25) 0 → ('26) 13.5* → ('27) 25.0 → ('28) 25.0 → ('29) 25.0 → ('30) 11.5
 - * 최근 5년간 융자액 중 5~12월이 차지하는 비율
 - ㉡ 2,595백만 원 = {1,000억 원 × (1-0.135('26년 원금 상환율))} × 3%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동 사업의 2025년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2026년도 계획안 중 2025년 대출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이자 지원분 25억 9,500만원은 집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5년 동 사업을 통해 1,000억원의 융자가 이루어져 계획액 30억원이 전액 집행될 것을 전제로 2026년도 계획안에서 2차년도 이차보전금을 2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87) 이는 근로자가 융자를 신청하였을 경우 통상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할 것을 전제로, 2025년도 융자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2026년에 13.5%의 원금을 상환함에 따른 이차보전액 추계임.

10월 24일 기준, 은행에서 실제 대출은 37억 6,500만원 집행되었고, 동
 사업 예산인 이차보전금의 집행액은 1,900만원(0.6%)에 불과함.

[2025년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 대출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신청		승인		대출 집행(은행)	예산집행(이차보전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당해연도 승인 건 중 집행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률
4,054	33,795	2,611	22,027	3,765	3,000	19	0.6

주) 실집행액은 2025년 10월 24일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렇듯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당초 2025년 1월부터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용자업
 무취급기관 선정 및 공단-은행 간 이차보전 전문 전산 개발 등의 사
 유로 사업개시일이 늦어지면서 2025년 5월 2일에야 사업을 개시하였
 다고 설명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충분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접수율도 저조하게 나타나
 고 있어 2025년 12월말까지 368억 8,800만원의 이차보전 추천⁸⁸⁾이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차보전금은 3,000만원(1.0%) 집행될 것으로

88) 근로자의 용자 신청 이후 공단에서 용자대상여부 및 용자사유 등 1차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받은 이들에 한하여 대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은
 행에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는 사업 구조임.

예측된다고 설명함.

[고용노동부의 2025.12월말 기준 이차보전금 집행예상액]

(단위: 천, 백만원)

구분	이차보전 추천(예상)		이차보전금(예상)	
	건수	금액	계획	집행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4,373	36,888	3,000	30

자료: 고용노동부

다년도에 걸쳐 이차보전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구조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예상과 같이 2025년도 계획액이 1.0%만 집행될 경우, 2026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어 있는 용자잔액에 대한 이차보전액의 집행 또한 불가능해지므로, 1차년도 이차보전액의 집행액을 고려한 합리적인 2차년도 이차보전 계획액 규모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때 이차보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대출의 규모는 당해연도에 ‘실제 대출이 승인된 금액’인데, 고용노동부의 예측에 따른 2025년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용자 승인액은 최대 368억 8,800만원⁸⁹⁾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서 2025년 용자잔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최대 9억 5,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9) 근로자의 용자 신청 → 공단에서 용자대상여부 및 용자사유 등 1차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받은 이들에 한하여 대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용자 승인액은 이차보전 추천액보다 적을 것임.

[2026년에 필요한 2025년 융자잔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 9억 5,700만원 = 368억 8,800만원 × 86.5% × 3%
- 368억 8,800만원: 고용노동부 추계에 따른 2025년 융자승인액 최댓값
- 86.5%: 고용노동부 산식에 따른 2026년 원금상환률 13.5% 제외한 2025년 융자잔액비율
- 3%: 이차보전금리

→ 감액 소요 △16억 3,800만원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사업의 2025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6년 집행이 불가능한 계획안을 일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본부]

(1)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일반회계, 4135-300)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2023년 ~, 직접)은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분석장비 도입과 디지털자료 확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하며(중대재해수사의 과학화), ③수사지원차량 지원, 증거확보 활동 지원, 통계 홈페이지 운영,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을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수사환경을 개선하고(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④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를 지원하며(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⑤2025년 수시직제와 2026년 정기직제로 큰 폭으로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의 사무공간 마련 등 업무 여건 구축과 교육, 출장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근로감독 제도혁신)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①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내역 사업에서 사업장 증거 확보 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과 증거 확보의 편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드론 추가 구입, 유지·

보수 및 영상편집 프로그램 비용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과반수 구성에 필요한 수당 등이 증액되는 등 1억 6,900만원이 증액되고, ②신규 내역사업인 근로감독 제도혁신에서 545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올해 예산에서 535억 3,400만원이 증액된 57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2,267	3,930	2,044	57,464	53,534	1,362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406 [406]	408	230	408	-	-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826 [826]	986	411	798	△188	△19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1,035 [1,035]	875	233	1,044	169	19.3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	158	0	158	158	-
▪ 증원 수사인력 지원	-	1,503	1,170	534	1,503	-
▪ 근로감독 제도혁신	-	-	-	54,522	54,522	-

*자료: 고용노동부

〈 스마트 장비(드론) 도입·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필요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접근하기에 위험하거나 시야의 한계가 있는 장소와 광범위하여 증거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거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21개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2기의 드론을 구비하였음. 2026년 예산안에는 28개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8기의 드론을 구비하고, 총 50기 드론의 유지보수와 촬영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구입 및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1억 5,300만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음.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장비 관련 계획액 산출근거]

(단위 : 천원)

	단 가	수 량	계획액	비 고
드론 구매	3,570	28	100,000	22기는 올해 구매, 만원 이하 반올림
유지보수	300	50	15,000	
보험료	670	50	33,500	
영상 편집프로그램	87	50	4,350	

중앙행정기관에서의 드론 사용은 경찰청이 2015년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다음과 같이 수색, 감시, 물질 측정,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⁹⁰⁾

90)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에서도 감시·조사·연구 또는 농업 등에 직접 드론을 활용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 드론 활용 사례⁹¹⁾]

기관명	활용 사례
국토교통부	하천 시설물관리·조사· <u>불법행위 단속</u>
법무부	교도소 <u>공중순찰</u>
농림축산식품부	산간오지, 위험 우려지역 등 접근 곤란지역 현장조사
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예방순찰, 유류 유출사고 대응 업무
환경부	미세먼지 농도 측정, <u>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u>
산림청	<u>불법 산림행위 단속</u> , 산불 감시, 병충해 감시
소방청	재난현장 업무지원
농촌진흥청	농작물 감시, 배수로·저수지 등 시설 감시
문화재청	고건물 및 시설물 점검, 병해충 예찰, 화재감시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해양오염 감시 및 관리
관세청	관세국경 우범지역 감시 및 순찰

그런데 중앙 행정기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법규 위반 여부 단속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고, 사용장소나 단속대상도 하천·교도소 등 국·공유 시설이나 재산, 임야나 대기 중 등 광범위한 장소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반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으로서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범위가 명확한 개인의 재산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91) 드론정보포털(droneportal.or.kr)>우리 드론 알림-e>공공분야 드론 활용 사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증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드론 활용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드론은 인간의 시각보다 더 증강(增強)된 시야(視野)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때에 비하여 단속범위가 매우 넓어져 단속대상과 관련 없는 개인, 사업주의 영업상의 비밀과 관련되거나 보안상 촬영이 제한되는 장소 등이 촬영될 수 있음.

이렇게 촬영된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서⁹²⁾ 그 수집과 보관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름. 특히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⁹³⁾ 촬영 사실을 사

92)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93)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업주나 사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촬영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데,⁹⁴⁾ 여기에는 정보관리자 지정이나 정보 접속기록 점검뿐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까지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사업주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보안과 관련된 촬영 정보도 개인정보와 유사하게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여부나 사후 정보 관리·조치 의무에 있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공중에 부양된 기계로서 드론은 언제든지 기체의 결함이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고장, 조종자인 산업안전감독관의 과실, 기상으로 인한 추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사업장은 위험한 기계나 물질과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서 드론의 추락이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⁹⁵⁾ 최소한의 범위를 대상으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장소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추락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나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에서 지속적으

94)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95) 8월 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대기질 측정을 위하여 띄운 드론에 충돌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음

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드론을 사용한 사업장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의 안전과 증거수집 활동의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주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드론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과 개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 사업주의 부동의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예측·분석하고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 매뉴얼이나 사업장에서의 드론 사용, 수집 정보 활용 및 처리 관련 지침 제정, 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실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 관련 대책 마련 등 새로운 기기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2)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3-351)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사업(2010년~, 출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업무상재해조사판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97억 5,700만원) 대비 43억 8,900만원(45.0%) 증액된 14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집행액 (‘25.7)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10,648 [10,648]	9,757	5,431 [5,251]	14,146	4,389	45.0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1,165 [1,165]	1,165	571 [440]	1,165	-	-
·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258 [258]	258	62 [12]	258	-	-
· 업무상재해조사판정	3,831 [3,831]	2,940	1,648 [1,648]	12,723	9,783	332.8
· 출퇴근재해보호지원	5,394 [5,394]	5,394	3,150 [3,150]	-	△5,394	순감

주) 내역사업 출퇴근재해보호지원의 예산은 내역사업 업무상재해조사판정사업 예산으로 통합·이관되었음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업무상재해조사판정’은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 부담 완화와 업무상재해 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29억 4,000만원) 대비 97억 8,300만원(332.8%) 증액된 12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업무상재해조사판정 사업의 세부 계획안 편성 내역을 보면,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비용 1억 1,400만원, 재해조사 위원수당 등 32억 7,400만원, 재해조사판정 업무지원 43억 2,200만원, 소송비용 14억 4,600만원,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19억 2,500만원,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3억 6,000만원, 산재보상 관련 정보공개 10억 8,200만원, 재해조사 신속처리 디지털 업무지원 2억원으로 구성됨.

〈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법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안 편성 및 과다계상된 수입료 조정 필요 〉

내내역사업인 ‘국선대리인 선임비용’은 업무상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은 신규로 1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을 신청한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 중 월 평균임금·보수 300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결정 및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위촉되며, 대리인에 게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의 보수가 지급될 예정임.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 $5,500\text{건} \times 700,000\text{원(건당 선임비용)} \times 0.5(\text{'26년 하반기 시행}) = 19\text{억 } 2,500\text{만원}$
* (질병 처리 건수) $38,219\text{건} \times (\text{'24년 대리인 선임 비율}) 14.4\%$

* 자료: 고용노동부

동 내내역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의 법적근거가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심사 및 재심사 청구 관련 규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입증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⁹⁶⁾

참고로, 유사한 사업인 노동위원회의 ‘무료법률서비스 지원’⁹⁷⁾ 사업은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노동위원회법」에 명확히 두고 있음.⁹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6) 참고로,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13578호)이 2025년 10월 14일 발의되었고,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음.

97) 일반회계,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98) 해당 규정은 2007년 신설되었음.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을 편성한 것이므로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선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은 건당 선임비용을 7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의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법률⁹⁹⁾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6년도 예산안의 건당 선임비용 단가는 38만 8천원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을 통하여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구조지원’¹⁰⁰⁾사업의 경우, 2026년도 계획안의 예상단가는 20만 9,900원임.¹⁰¹⁾

동 사업의 신규 추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입증 등에 대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가 대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역학조사, 의료자문, 현장조사 등

9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0) 임금채권보장기금, 무료법률구조지원(3052-302)

101) 253,416원('24년 단가) x 91% x 91% (연평균 증가율)

사실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국선대리인의 역할은 공단이 수집·작성한 조사자료와 의학적 판단서를 검토·분석하여 수급권자 측의 주장을 정리·보완하는 법률적 지원의 영역일 것인데, 타 법률지원 사업 대비 약 1.75배 높은 단가를 책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²⁾

102)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해야하는 산재보험 국선대리인의 경우, 대리 행위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다른 제도와 직접적으로 단가를 비교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산재보험 국선대리인의 경우, 1건당 최대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행위항목(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직업력조사표 작성, 의료기록 분석 등) 및 만족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3)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7-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1995년~, 출연)은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전산장비 유지관리,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국가 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산재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보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191억 1,400만원) 대비 40억 7,700만원(21.3%) 증액된 23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A)	집행액 (‘25.7)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0,059 [20,059]	19,114	6,841 [6,276]	23,191	4,077	21.3
· 산재마루시스템 개 편 등 고도화	-	-	-	768	768	순증
· 전산장비 유지관리	9,665 [9,665]	9,606	2,943 [2,937]	9,606	-	-
· 정보시스템운영지원	2,094 [2,094]	1,952	731 [730]	2,399	447	22.9
· 스마트산재보상시스 템 구축	7,009 [7,009]	5,159	2,609 [2,609]	4,218	△941	△18.2
· 산재보험전산망 재 해복구센터 구축 ISP	344 [344]	-	-	-	-	-
· 산재보험료율시스템 고도화	598 [598]	-	-	-	-	-

· PDS 솔루션 도입	349 [349]	-	-	-	-	-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	2,240	487 [-]	6,200	3,960	176.8
· 소득기반 산재·고용 보험 정보시스템 구 축 BPR/ISP	-	157	71 [-]	-	△71	순감

*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근로복지공단
의 주전산센터가 재난 발생으로 가동 중단될 경우, 4시간 이내에 산재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을 재가동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4년 ISP
수립 이후 2025년 센터기반구축 중으로, 2026년에는 고용·산재보험 등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임.

동 사업 계획안은 전년(당초 기준, 22억 4,000만원) 대비 39억 6,000
만원(176.8%) 증액된 62억원이 편성되었음.¹⁰³⁾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 개요]

- (추진기간) 2024년~2027년
- (총사업비) 280억 2,800만원
- (추진계획)
 -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3억 4,400만원)
 - 2025년 공단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44억 8,000만원)
 - 2026년 산재·고용보험 재해복구시스템 신규 구축(133억 2,500만원)
 - 2027년 퇴직연금, 근로복지 재해복구시스템 신규 구축(102억 2,300만원)
- ※ 2025년·2026년 예산은 산재기금(50%)·고용보험기금(50%) 분담,
2027년 예산은 근로복지기금 등과 비율별 분담

* 자료: 고용노동부

103)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시스템 2개 시스템과 관련되
는바, 2026년 관련 예산이 산재기금 등 사업 62억원, ‘고용보험적용부와 정보시스템 구축(정보
화)’(고용보험기금, 1083-355)의 내역사업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62억원)으로
분할하여 편성되어 있음.

〈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고용노동부는 당초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2025년 기반시설 구축 후 2026년과 2027년에 1~2등급 위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이후 3~4등급 시스템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실시하는 등 운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음.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 단계별 이행 로드맵]



* 자료: 고용노동부

구체적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구축에 착수하여, 2~3분기에 하중 및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3분기부터 기반 설비 구축을 시작하여 2025년 내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

구분		2025				2026				2027				202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기반 설비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착수	하중 및 내진 보강공사														
				기반 설비 구축		네트워크 환경 구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1순위 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착수	1순위 시스템 구축	전환테스트	안정화	시스템 운영							
	2순위 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착수	2순위 시스템 구축	전환테스트	안정화	시스템 운영			
	확대 구축 및 고도화													중요도를 고려한 선별적 확대 구축 및 고도화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2025년 8월말 기준 동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2025년도 계획액 22억 4,000만원 중 5억 2,200만원(23.3%)이 출연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교부되었을뿐 실집행액은 900만원(0.4%)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2025.8. 기준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5.8.	2,240	522	522	-	522	9	-	-	0.4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초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을 위해 신축을 고려하였으나, 신축하는 경우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타 기관 등 소유 건물의 임차 시 비용 과다 및 보안상 문제 발생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3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위치를 확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축기획 등 이후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부터 건축설계 진행 중으로, 2025년 11월 초 재해복구센터 구축 공사 입찰을 추진하여 1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건축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¹⁰⁴⁾에 따라 입찰공고만 최소 40일이 소요될 것으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로 보인다는 점, 그 외에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협의, 낙찰자 결정 후 협상 및 계약과정을 고려하면 통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예상 기간보다 착공 및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2026년 예정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순연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사업의 2025년 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2026년도 계획안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재보험 등 업무가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2001년~, 출연)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50억원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①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¹⁰⁵⁾·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제조·서비스업 등에 지원)·스마트 안전장비¹⁰⁶⁾ 구매를 지원하고(안전일터 조성지원), ②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며(안전동행 지원사업), ③화학물질·조리부산물 노출 위험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¹⁰⁷⁾ 설치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구매를 지원하는(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¹⁰⁸⁾ 예산 429억원이 내역사업인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에 신규로 계획되는 등 올해보다 553억 100만원이 증가한(11.5%) 5,37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105) 건설현장 추락 예방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고소작업대 등), 붕괴 예방시설(시스템동바리 등) 임차 및 구입 비용 지원

106)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

107)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이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배출하는 장치로써, 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송풍기·배출구로 구성

108) 1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떨어짐 예방설비(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등) ▲ 노후화된 컨베이어, 롤러기 등 교체 ▲부딪힘 예방을 위한 인체감지센서 및 모니터 등 충돌예방장치 등 설치·교체 비용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71,652	481,792	391,625	537,093	55,301	11.5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95,707	-	-	-	-	-
· 스마트안전장치 보급확산	35,000	-	-	-	-	-
· 안전일터조성지원	-	110,707	60,333	160,607	49,900	45
· 안전동행 지원사업	321,997	332,000	308,135	332,000	-	-
· 건강일터조성지원	15,824	35,825	21,653	40,825	5,000	13.9
· 클린사업장 사후 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3,124	3,260	1,504	3,661	401	12.3

* 자료: 고용노동부

〈 안전동행지원사업의 자본보조적 특성과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사업 추진 효과성 여부 등의 관점에서 현 지원 방식의 재검토 필요 〉

이 사업의 예산과목은 사업출연금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 개요]

구분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지원 품목	- 제조·서비스업 등의 추락·끼임 등 사망 사고 예방품목(지게차 충돌 예방장치 등) - 스마트 안전장비 (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 건설현장 추락·붕괴 예방 시설(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구입·임차 -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덮개 또는 방호울, 인터록 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컨베이어, 롤러기 교체, 인체감지센서(카메라) 및 모니터등 충돌예방장치)	-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기계·설비 등 공정개선, 화재·폭발 대응시설 등)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 온열질환 예방장비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지원은 상시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 업종 사업장(뿌리공정, 기계기구·금속 제조 등 6대 업종, 1·2차 전지 제조업 등)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지원 비율	- 제조·서비스업 70% - 스마트 안전장비는 80% -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 20억~50억원미만(50%)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지원은 90%	50%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은 40%(원청 10% 부담)	50인 미만 70% 50~99인 50%
지원 금액	최대 3천만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건설현장은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최대 1억원	최대 5천만원
선금	선금 70% (사업장 신청 + 지급보증보험 확인)	선금 80%(민생경제사업)(사업장 신청 + 지급보증보험 확인)	선금 70% (사업장 신청 + 지급보증보험 확인)

내역사업인 안전동행지원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¹⁰⁹⁾ 매년 3,000억원이 넘는 규모로¹¹⁰⁾ 노후·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정과정 내 설비나 기기 교체 비용을 사업장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안전동행지원 사업은 총 4,029개의 2024년 지원 사업장 중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1,644개,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장도 1,798개에 달하는 등 단일 지원사업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이고, 사업장 당 지원금액도 큰 편에 속할 뿐 아니라, 유사한 지원규모의 사업이¹¹¹⁾ 대부분 생산시설의 효율화(자동화)나 친환경 등 정책목적에 따른 생산시설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업은 공정 내 기기나 설비 자체를 구매·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재산의 효용이나 가치 증가에 직접 기여하는 ‘자본보조’의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과 같이 지원사업을 감독할 권한이나 수단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없어 지원 사업장과 설비·기기 공급업체 간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¹¹²⁾ 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109) 2021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이라는 내역사업으로 시작됨

110) 안전동행지원사업(구 안전투자혁신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27,100	327,100	319,880	332,000	332,000	332,000

111) 참고자료1. 타 중앙행정기관의 유사한 지원규모 사업 참조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라 지원 후 사업주의 임의적 처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¹¹³⁾ 제한되어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임.

①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장 퇴사자의 제보로 가격을 부풀린 가상 세금계산서로 지원금 과다청구한 사실이 밝혀져¹¹⁴⁾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②안전동행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이나 시행 계기 등이 경기부양정책으로 민간 사업장에 자본을 보조하는 측면이 크며, ③무엇보다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산업재해예방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재산 처분의 제한” 규정이 있음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114) 2025년 4월 지원사업장 퇴사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원에 신고하여, 산업용로봇의 부속설비(레일·펜스 등)를 자체 설치하고, 해당 금액을 판매업체가 제작·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과다청구한 사실이 확인됨

바,

당초 사업의 시초가 된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¹¹⁵⁾ 지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지원사업이 자칫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 인식의 소홀함이나 정부 의존적인 행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한도와 지원비율 등 사업의 시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5) 2023년 5월,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료 발표

참고자료1. 타 중앙행정기관의 유사한 지원규모 사업

주관 행정기관	시행기관	사업명	25년 총 지원규모	사업장당 지원규모(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환경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00억원 내외	총사업비 70% (최대 3억원)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 순환, 자연생활환경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제품제작 포함)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100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중소·중견 제조업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스마트제조혁 신추진단	스마트 제조혁 신 지원사업(스 마트 공장 구축)	691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30~50%(최대1.2 억원~10억원)	중소·중 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100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50% (최대 2 억원)	중견기업	AI기술을 활용한 스마 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단지 공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20개사	최대 1.5억원	창원 산업 단지 내 50인 미 만 중소기업	공장외관, 녹지환경 개 선 비용 지원

(5) 업종별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업종별재해예방(1988 년~, 출연) 사업은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업 고위험 사업장에 위험요인 점검 및 제거 기술지도와 위험성평가 실행을 지원하고(사고성재해 집중관리),¹¹⁶⁾ ②소규모 사업장(1억원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등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 기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탁하여 실시하며(민간 기술지도),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¹¹⁷⁾ 제외한 300인 미만 사업장 중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新화학산업 분야 사업장¹¹⁸⁾ 등을 방문하여 기술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 확인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고위험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중상해 재해¹¹⁹⁾ 발생 사업장 재해원인 분석·개선조치 지원·이행 확인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116) 인정사업장 중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은 3년간 산재보험료를 20% 감면함

117)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118) 전지산업, 수소산업, 폐플라스틱 산업, 바이오가스 산업

119) 90일초과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이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은 올해 계획액 1,631억 5,200만원에서 7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348억 2,900만원임.

[2026년도 업종별재해예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업종별재해예방	148,410	163,152	110,791	234,829	71,677	43.9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11,236	13,386	6,545	60,234	46,848	350
· 민간 기술지도	44,836	51,323	39,855	51,273	△50	△0.1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578	2,620	1,526	2,620	-	-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89,760	95,823	62,865	120,702	24,879	26

〈 정책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 요건 및 위촉 운영제도 재검토 및 보완 필요 〉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은 ①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업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및 핵심안전수칙 등의 안내와 집중 점검·지도를 하고(패트롤 현장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TBM)’과¹²⁰⁾ 연계하여 근로자에게 상시 공유하도록 지원하

며,¹²¹⁾ ②종합심사낙찰제건설안전지표를¹²²⁾ 산정하고, 직종별 재해예방 플랫폼과¹²³⁾ 건설현장 실시간 종합정보체계,¹²⁴⁾ AI·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지원시스템을¹²⁵⁾ 구축·운영하며,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받거나 등록된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고,¹²⁶⁾ ④협·단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하며, 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거나,¹²⁷⁾ 자율적으로 진단 신청 한 사업장을(자율진단)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접

120) Tool Box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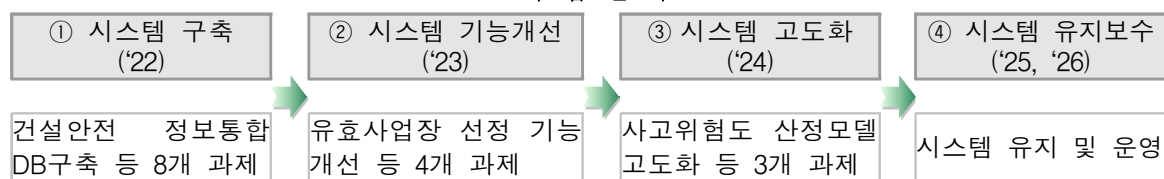
121) 인정사업장 중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은 3년간 산재 보험료율 20% 감면함

1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관련 공공 발주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입찰하는 공사의 입·낙찰제도 심사항목에 반영되는 건설안전지표(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산정

123) 이륜차 배달종사자, 택배·대리기사, 방문점검인·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단독, 이동노동하는 종사자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에 직종별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Open-API 방식)을 구축·운영

124) 적기에 산업재해예방 서비스 제공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 예방사업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유호사업장 추출이 가능하도록 확장된 DB구축하고, 공사 종류 및 공정별 사고 발생위험 등을 토대로 건설 현장의 사고 발생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 사업 절차 >



125) 고위험 수준 및 사업장이 보유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알기 쉽게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사업장 고유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활용하고 외부 데이터 연계하는 등 AI 학습 데이터 인프라를 확장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예측 결과의 근거 및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위험사업장 AI 예측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는 내용으로 『고위험사업장 AI 예측 시스템 고도화』 추진

126) 참고자료1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등록·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참조

127)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진단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새로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의 계획액은 445억 7,800만원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높은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완성배·블록업체의 협력업체와 수리조선 사업장,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¹²⁸⁾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기간제 지킴이) 근로자단체와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현직자를¹²⁹⁾ 위촉한(위촉 지킴이)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화재·폭발사고 위험현장,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불시 순찰하여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를 보완하려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0세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자¹³⁰⁾ 선임의무

128)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0.39‰) 보다 높은 대표적 사고사망 취약업종은 건설업(1.57‰)·조선업(1.12‰)·제조업(0.46‰)으로 특히 소규모·협력업체 노동자가 취약

(건설업) 사고사망자(276명)의 66%(181명)가 50억 미만 소규모현장에서 발생

(조선업) 사고사망자(20명)의 85%(17명)가 협력업체에서 발생(조사통계)

(제조업) 사고사망자(187명)의 82%(154명)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129)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인총연합회 등 노사단체에 1-2년 이상 소속된 인력을 주축으로 운영 하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함.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30)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없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였던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201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¹³¹⁾)을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간제 지킴이의 경우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과 같이 만 50세 이상 퇴직자 중 다음과 같이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종사한 실무경력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를 선발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족한 산업재해예방 인력을 보완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을¹³²⁾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기간제 지킴이 자격요건]

업종	자격요건	경력요건 확인
건설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호에¹³³⁾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 경력* 또는 ◦ 건설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 퇴직 인력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선·제조업	◦ 조선·제조업 6개월 이상 실무 경력* 또는 ◦ 안전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산업안전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 퇴직 인력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31)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사업 종료됨.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132) OECD 평균: 0.29‰,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0.39‰

다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종료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서 숙련도 높은 인력 수급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¹³⁴⁾ 최저 시급 수준의 임금을 30% 이상 인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였고, 평균 400명 내외로 선발했던 인원을 800명으로 늘려 사업의 규모도 확장한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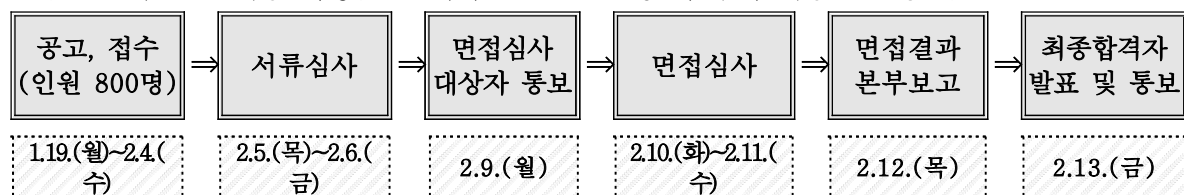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정책 목적에 충실하면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¹³⁵⁾ 지역별로 균형 있게¹³⁶⁾ 모집·채용하기 위해서는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재검토하여 숙련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200명의 규모로 운영될 ‘위축 지킴이’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기간제 지킴이와 달리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단체나 사업주 단체에서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133) 참고자료2.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참조

134) “퇴사원인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전직 등 본인의 원에 의한 퇴사로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잦은 현장 출장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2021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685 페이지)

135) 연초에 일괄 채용 예정(중도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수시 채용으로 충원)



136) 과거 안전보건지킴이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31개 일선기관별로 모집·채용할 예정인데, 2021년 안전보건지킴이 모집·채용 시 서울광역시본부, 서울동부지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중부지사 인천광역시본부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본부와 충청남도본부 등에서 정원 대비 5명 이상, 최대 12명까지 결원이 발생하였음

지킴이 업무를 겸직하고, 순찰 건당 11만원 정도의¹³⁷⁾ 사례비를 받으며, 산업재해 취약 시기에 반기별로¹³⁸⁾ 모집하여 위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노사가 협력하도록 하려는 위촉 지킴이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①현직에 있는 자를 겸직하여 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건당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족한 산업재해예방 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②시간당 14,500원의 임금을 받으며 하루 3개의 사업장을 순찰 업무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기간제 지킴이와 현직에 있으면서 1건당 11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위촉지킴이가 업무량에 따른 임금 측면 등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¹³⁹⁾ ③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의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촉지킴이가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위촉 지킴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사망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점검과 지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

137) 해당 금액은 동 내역사업중 사고성재해집중관리 내역사업에서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15만원에서 순수한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임

138) (1차 모집 공고) '26.1월 중 → 27월 활동, (2차 모집 공고) '26.7월 중 → 8~12월 활동
↳ 상·하반기 모집공고를 통한 보다 많은 노사단체의 관계자의 참여를 독려

139) 기간제 지킴이는 하루 11만 6,000원의 임금으로 3개의 사업장 순찰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건당 약 11만원을 받는 위촉 지킴이의 인건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음

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요건과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1. 민간산업재해예방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등록·평가 관

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

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2.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기업 안전보건공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공시 대상에 공공기관 포함 여부 검토 필요 〉

다른 내역사업인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①「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와 이행을 확인하고, ②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③산업안전보건법령 외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기술적 요구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표준을 제·개정하며, ④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⑤협·단체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는 민간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6년부터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와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기업 안전보건공시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및 대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안에는 시스템 구축비용 등 9억 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까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¹⁴⁰⁾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포털¹⁴⁰⁾ 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1년간 안전보건공시를 하도록 후 2028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140) <https://portal.kosha.or.kr/>

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정부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검토·평가하여 수준에 따른 점검 및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기업 공시제도는 기업의 주요 정보 공개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이나 주요 이해관계인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평판을 높여 경영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각종 법령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기업의 공시 참여도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공시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미공시 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¹⁴¹⁾

다만, 기업의 오공시나 부실한 정보 공시를 운영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미공시만을 제재하고, 오공시 및 부실공시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공시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당초 고용노동부가 기대한 정책의 효과는 거두

141) 이와는 별개로 이용우 의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6)을 대표발의 하여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¹⁴²⁾

또한, 기획재정부가 구축·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¹⁴³⁾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¹⁴⁴⁾ 안전경영책

142) 이에 반하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 상의 공시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이나 벌칙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3) 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1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공시에 따라

2. ESG운영 항목 > 21.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 21.1. 안전관리현황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임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 감축 목표·실적, 안전 관리 대상 사업·시설, 안전 예산 및 인력 현황, 안전 전담 조직 및 역할, 위험성평가 추진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등 ①당해연도 안전관리 기본현황과 안전활동 추진실적,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과 성과 등¹⁴⁵⁾ ②당해연도 안전경영 실적 및 평가, ③차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주요내용 등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러한 공시 정보를 활용하는 하는 것이 국민에게 정착된 상황에서¹⁴⁶⁾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시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유사한 규제 정책을 각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별 추진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최근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에¹⁴⁷⁾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¹⁴⁸⁾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145) 안전경영방침과 추진실적 요약,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소규모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우수사례,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등의 항목이 있음

146) 2006년 20개 항목으로 공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근거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2023년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여 현재는 총 48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음.

147)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지배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을 해당 지주회사(지배회사)가 공시하도록 규정

148) 금융위원회는 ①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¹⁴⁹⁾ 반영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취지의 정책이 고용·노동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정책의 추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제도의 이행과 공시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철저하게 비교·분석하여 공공기관을 기업 공시제도 대상으로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의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공모사업 이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설정 고려, 사업이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엄격한 사후 평가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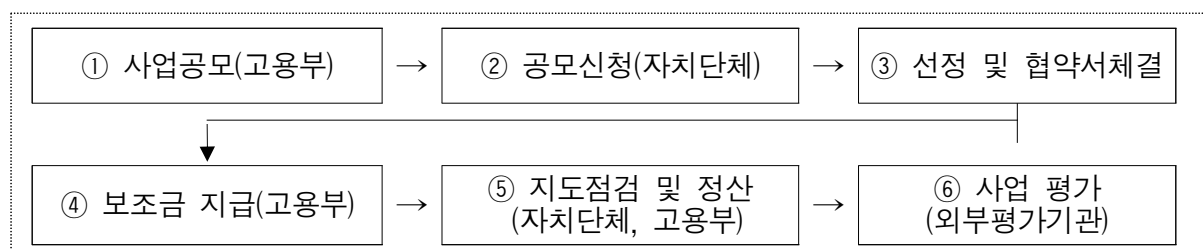
다른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업 형태, 중대재해 발생현황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액은 143억 2,100만원임.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높은 원인 중 하나가 현행 산재 예방 지원사업이 중

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의결함(2025년 10월 1일)
149)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

양 행정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건설 인허가권, 주력 업종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기초자치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업, 노·사 단체, 비영리법인 등과 자율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10개를 선정하여 컨소시엄 당 사업비 평균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대부분의 사망사고의 원인이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에서 비롯된 산업재해의 전형(典型)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¹⁵⁰⁾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사망만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지역에 특화된 산업재해예방사업이 부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의 사례도

150) 이러한 산업재해 유형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종별로 분류하였을 때는 건설업(46.9%), 제조업(29.7%)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①중대재해 다발 또는 고위험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점검, 시설 개선, 교육·캠페인 등 산재예방 패키지 지원 ②농·임·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점검, ③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컨설팅·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세미나·포럼·캠페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사업 시행 주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사업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및 사망자수 발생 현황]

(자료: 2024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재구성)

구 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사망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총 계	584	598	553	589
떨어짐	249	251	227	227
물체에 맞음	67	67	83	83
부딪힘	79	79	48	50
끼임	54	54	66	66
깔림·뒤집힘	43	43	43	46
감전	10	10	22	22
화재·폭발·파열	26	30	19	44
무너짐	30	34	18	20
빠짐·익사	6	6	10	12
화학물질 누출·접촉	1	1	10	12
넘어짐	3	3	2	2
절단·베임·찢림	3	3	2	2
이상온도 접촉	5	6	2	2
산소결핍	8	11	1	1

또한 이 사업은 재정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사업비를 100%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전문성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내실 있는 설계와 추진, 책임 있는 사업 이행과 수혜자의 자기부담의 원칙 구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수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수행 결과를 엄격히 평가·환류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망자 수가 많은 노무제공자의¹⁵¹⁾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서 노무제공자와 밀착해 있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안전조치 실시 사업을 지원하는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과, 업종별로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사업으로서 각종 협·단체의 자료 제작·보급 및 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체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고,¹⁵²⁾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까지 지원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

151)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27명 중 노무제공자는 101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함

152) 참고자료1.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 참고자료2 20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참조

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기존 산업재해 예방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¹⁵³⁾ 사업 시행주체들의 이행력이나 사업내용의 충실성 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①공모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특화 내용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②사업의 질과 이행력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방비 부담 여부를¹⁵⁴⁾ 고려하여야 하며, ③선정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주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당초 사업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3) 안전보건교육, 안전보호구나 안전용품 지급, 안전보건관련 책자 발간 등 기존 산재예방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154) 지방비 추가 편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심사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참고자료1.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

연번	지원단체	지원금액 (천원)	주요 내용
1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55,000	- 이륜자동차 점검 및 정비 지원 (브레이크 등)
2	쿠팡이츠서비스(유)	26,860	- 이륜자동차 점검 및 정비 지원 (브레이크 등)
3	(주)우아한청년들	9,140	- 안전운전 교육 및 폭염 등 취약시기 재해예방 활동
4	전주시청	24,000	-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시인성 강화 지원(반사스티커 부착 등)
5	영등포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31,070	- 안전교육, 폭염 등 취약시기 재해예방 활동 (반사스티커, 얼음물 등)
6	(재)한국플랫폼 프리랜서노동공제회	77,280	- 라이더 안전지킴이 양성 및 활동 (도로위험상황 신고 등), 안전교육
7	(사)퀵서비스협회	39,795	- 야간 시인성 강화교육 및 지원 (반사스티커 부착 등)
8	경북개인(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12,000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인성 강화 지원 (후부 반사판, 안전조끼 등)
9	전국개인중대형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19,855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인성 강화 지원 (후부 반사판, 안전조끼 등)
10	충청남도	25,000	- 굴착기 전도 사고 예방 활동

참고자료2. 2025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연번	지원단체(기관)	지원금액 (천원)	사업 내용
1	대한상공회의소*	731,000	- 업종별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점검가이드 개발·보급 -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턴트 전문교육 - 업종별 참여기업에 대한 합동 컨설팅 - 합동 컨설팅 참여기업 안전보건활동 사후 모니터링 - 업종별 안전보건 맞춤형 교육
2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68,000	-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실무가이드 및 콘텐츠 제작·보급 -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등
3	부산경남 금형공업 협동조합	67,000	- 금형관련 제조업체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영상 제작 및 보급 - 사업주 및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대상 협·단체: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6)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5-350)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1988년~, 출연)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여 ①안전경영정책연구, 산업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화학물질연구 등 안전보건 분야별 자체·위탁연구 수행하고(안전보건연구사업), ②해외 안전보건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선진 안전보건정보를 교류하며(국제협력사업), ③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산재통계자료를 생산·보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은 올해 계획액 73억 3,1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70억 3,100만원임.

[2026년도 산재예방시설건립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7,749	7,331	5,061 (4,410)	7,031	△300	△4.1
· 안전보건연구사업	3,998	3,341	2,289 (1,995)	3,241	△100	△3
· 국제협력사업	805 (805)	885	283 (246)	885	-	-
· 산업재해통계	2,946 (2,946)	3,105	2,489 (2,169)	2,905	△200	△6.4

〈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는 국제협력사업 지양 필요 〉

내역사업인 국제협력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국제기구 (ILO, WHO, OECD, ASEAN, APOSHO 등)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보건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산업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신기술을 습득하며, 해외 산업안전보건 기술 관련 규정이나 자료를 번역하고, 산업안전보건 영문 뉴스레터(KOSHA News)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액은 올해와 같은 8억 8,500만원임.

해당 내역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0회 내외의 해외 출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특정 부서나 노조전임자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해외 출장을 매년 수차례 실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특정 부서(지위) 직원 해외 출장 실시 내역]

연도	출장명	방문국가	방문기관	출장자 부서 및 직급	출장기간	출장경비
2024	노사관계 최고지도 자 과정	스위스, 독일, 벨기에	국제노동기구 (ILO), 독일서비 스 노동조합 (ver.di), 유럽노 동조합연구소 (ETUI)	경영노사협력부 2급 노조전임자 3급	7박 8일	14,320,000원
2024	국제산업안 전보건회의 (WOS2024) 참석	독일	국제산업안전보 건회의	경영노사협력부 1급, 4급 노조전임자 3급 2인	6박7일	15,197,170원

2023	노사 관리 기법 습득	스페인, 스위스, 독일	스페인 경제사회 이사회 국제노동기구 독일금속노조	경영노사협력부 2급 노조전임자 3급	7박 8일	11,180,000원 등록비 3,990,424원 별도 ¹⁵⁵⁾
202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	미국, 캐나다	미국 AFSCME 캐나다MobisParts CanadaCorp. 캐나다OFL	경영노사협력부 1급, 3급 노조전임자 3급 2인	7박 8일	33,617,469원 통역비 1,862,000원 별도 ¹⁵⁶⁾
2022	노사 관리 기법 습득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국제노동기구 네덜란드사회경 제협의회 독일SAP본사	노조전임자3급	7박 8일	5,496,000원
2023	청 럽 선 진 국 반부패 활동 및 감사 우수 사례 습득	대만	타이베이 감사 부, 대만 검찰원, 내부감사협회	감사실 3급 2인, 4급 1인, 기획조정실 4급, 산업안전실 4급, 충북지역본부 2급	4박 5일	12,348,820원

그런데 해당 출장 중 5건은 노동조합전임자 또는 노조전임자와 노동조합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었고, 방문기관은 노동조합 연구소나 사회적 협의기구 등이 대부분이며, 감사행정과 관련된 출장 1건 또한 감사모범사례 포상자 및 일부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대만의 감사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실시되는 등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이라는 세부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2023년 실시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의 경우 특정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면담 등

15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에서 지출

1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에서 지출

공식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온타리오 노동조합 연맹이 소재한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방식으로 마치 온타리오 노동조합 연맹을 공식 방문을 한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한 내용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운영과 모든 사업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출연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이라는 세부사업에서도 안전보건정책과 관련된 교류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출장이 실시되어야 하며, 조직의 운영 등 일반적인 출장은 다른 세부사업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7084-205)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산재예방시설건립(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1)

<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

산재예방시설건립(1996년~, 출연) 사업은 ①노후화되어 사용이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을 새로 건립하고(노후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¹⁵⁷⁾ ②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이전 건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 등의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며(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③안전체험교육 개선 및 민간 체험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은 올해 계획액 42억원에서 13억 1,800만원이 감액된 28억 8,200만원임.

[2026년도 산재예방시설건립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집행액 (‘25.7)			
■ 산재예방시설건립	5,544	4,200	2,400	2,882	△1,318	△31.4
· 익산안전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5,253	-	-	-	-	-
· 영암 안전체험 교육 장 건립 타당성조사	97	-	-	-	-	-
· 노후안전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194	4,200	2,400	2,220	△1,980	△47.1

157) 2024년 계획액은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에 소요된 것이고, 2025년도 계획액은 인천 안전체험교육장 재건축에 집행될 예정임

· 노후청사 내진성 능 검사 및 보수	-	-	-	462	-	-
· 안전 체험 교육장 관련 용역	-	-	-	200	-	-

〈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 계획액 감액 필요 〉

내역사업인 ‘노후청사 내진성능 검사 및 보수’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청사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동매뉴얼 이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교육동 및 연구동 포함) 등 총 5개 청사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2억 4,000만원의 계획액을 편성하였고, 경북지역본부 청사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억 2,200만원의 계획액을 편성하였음.

[청사별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보강공사 계획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청 사	계 획 액	사용승인일
내진성능평가	본부·교육·연구동	75	<u>2016.12.16.</u>
	산업독성연구센터	39	1998. 5.23.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41	2004.12.22.
	경남지역본부	45	1997. 8.28.
	전남동부지사	40	2000. 8.10.
내진보강공사	경북지역본부	222	<u>2010.12. 1.</u>
	총 계	462	-

현행 「건축법」 제48조에¹⁵⁸⁾ 따른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를 강화하였음.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연혁]

제도시행일 (법령 시행일)	건축허가일 ¹⁵⁹⁾	기준 ¹⁶⁰⁾		높이
		(층수)	또는 (연면적)	
2017.12.01	2017.12.01 ~	2층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200㎡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	13m이상
2017.02.04	2017.02.04 ~ 2017.11.30	2층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500㎡이상	13m이상
2015.09.22	2015.09.22 ~2017.02.03	3층이상	500㎡이상	13m이상
2009.07.16	2009.07.16 ~ 2015.09.21	3층이상	1000㎡이상	13m이상
2005.07.18	2005.07.18 ~2009.07.15	3층이상	1000㎡이상	
1996.01.06	1996.01.06 ~ 2005.07.17	6층이상	1000㎡이상	
1992.06.01	1992.06.01 ~ 1996.01.05	6층이상	10,000㎡이상	
1988.08.25	1988.08.25 ~ 1992.05.31	6층이상	100,000㎡이상 (공동주택 제외)	

그런데 경북지역본부의 경우 2009년 12월 11일에 건축허가를 받은

158)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9) 개정된 법령 적용 시점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 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

160) 층수 또는 연면적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됨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400.33㎡, 높이 17.55m 건축물로서 2010년 1월 2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본부·교육·연구동의 경우 2011년 10월 25일에 건축허가를 받은 지하1층, 지상 8층의 연면적 36,184.15㎡, 높이 36.17m 건축물로서 2016년 12월 16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각각의 건축물은 해당 시점의 건축법령에 따라 당연히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임¹⁶¹⁾).

이러한 법령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불일치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건축물들은 모두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

161)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 _E)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I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Ⅱ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1.0

※ 별표 11은 참고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참조

계가 적용된 건축물이나,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구미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오기(誤記)하였다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하였다고 함.

또한, 해당 내역사업은 정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계획에 따른 목표 내진을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여부 기재란에 비적용으로 표기가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 경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평가지진에¹⁶²⁾ 대하여 내진성능 목표를¹⁶³⁾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수행기관이 경북지역본부의 내진등급을 ‘특’으로¹⁶⁴⁾ 분류하고, 해당 내진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성능목표를 설정하였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6년 계획안 작성 시 내진보강공사비를 계획하였고, 본부·교육·연구동 등 다른 건축물대장 상의 내진설계 비적용 건축물도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평가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경북지역본부는 건축법령상 중요도 2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내진등급 II에 해당함에도, 중요도 특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진등급 특을 기준으로 한 성능목표로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안전보건공단은 별도의 검증 없이 해당 결과를 그대로 수용

162)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시설물의 지진환경과 여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지진 또는 지진세기

163) 평가지진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시설물에 요구하는 목표

164) KBC2009에 따른 지진하중 즉,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2/3 지진 작용 시 ‘즉시거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즉시거주’란 지진 작용 이후 쾌락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기능이 유지되고, 거주성·작용성·사용성이 유지되며, 즉각 재개복귀가 가능하고,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함.

하여 내진보강공사를 계획하였음.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¹⁶⁵⁾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내진성능평가 용역과는 별도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진성능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절차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내진보강공사를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함.

즉, 이 내역사업은 행정절차상 오기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거나 계획하고 있고, 이미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또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해당 건축물들은 사용기간이 약 9년에서 15년 정도로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바, 본부·교육·연구동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계획액 7,500만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고, 경북지역본부 내진보강공사 또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65)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020. 7)

【참고자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 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m ²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m ² 이상인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동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 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m ²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 지역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 안전체험교육장 재건축 계획액 증액 필요 〉

노후안전체험교육장 시설개선 내역사업은 노후화되어 안전체험교육장 사용이 중단된 경북지역에 5년동안¹⁶⁶⁾ 총 311억 8,100만원을 들여 대구·경북 산업특성을 반영한 6개 체험관으로 구성된 안전체험교육장 1동을¹⁶⁷⁾ 신규부지로¹⁶⁸⁾ 이전하여¹⁶⁹⁾ 건축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북지역 근로자들의 안전체험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부지매입비, 기존시설 해체비, 설계비 등 22억 2,000만원이¹⁷⁰⁾ 계획되어 있음.

현재 전국에는 고용노동부 출연사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8개의 안전체험교육장이 있음. 이 중 4개소만이 정상 운영하고 있고, 재건축이 예정된 경북 안전체험교육장 외 경남·충청 안전체험교육장이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¹⁷¹⁾ 받아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중부 안전체험교육장이 재건축되어 올해 12월 재개관할 예정임.

166)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67)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500m²

168)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부지면적 6,000m²

169) 고용노동부는 기존부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583-1)는 정밀안전 점검 실시 결과,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인근 300m 이내에 채석장이 있어 소음발생 등 교육환경으로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임야지대 중산간에 위치, 진입도로 협소, 동절기 결빙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함

170) 부지매입비 2,000백만원, 매입경비 18백만원, 설계비 100백만원, 기존시설 해체비 102백만원

171) 주요부재 결함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전국 안전체험교육장 현황]

연번	운영현황	명칭	규모	사업비	개관	콘텐츠
1	운영중단	경남 (김해)	3,112㎡ (941평)	29억	‘02년 6월	24종 (건설업)
2		경북 (경산)	1,700㎡ (514평)	35억	‘08년 2월	26종 (건설업)
3		충남 (공주)	1,650㎡ (499평)	43억	‘09년 4월	28종 (건설업)
4	정상운영	제천	1,977㎡ (598평)	79억	‘19년 3월	30종 (조선업)
5		담양	1,525㎡ (462평)	71억	‘23년 5월	30종 (조선업)
6		여수	4643㎡ (1,404평)	246억	‘23년 12월	50종 (조선업)
7		익산	4,385㎡ (1,328평)	222억	‘24년 12월	50종 (조선업)
8	신규건설 (재개관예정)	중부 (인천)	3,912㎡ (1,185평)	190억	‘25년 12월 (예정)	설계 진행 (조선업)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런데 경상지역은 현재 정상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이 없어 경북 안전체험교육장이 개관되는 2031년까지 이 지역 근로자들에게는 공공 안전체험교육의 공백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이후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여전히 공공안전체험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어 공공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운용 계획안 계획안 작성과정에서 경남 안전체험교육장은 이전 재건축을

위한 신규부지 매입에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북 안전 체험교육장 재건축을 위한 계획액 22억 2,000만원만 계획에 반영하였고 설명함.

그러나 ①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규모는 다음과 같이 전국의 약 13.9% 수준이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도 전국의 15.9% 수준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높고,

[지역별 사업장 및 노동자 현황(2022.－ 2024.11.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 구분	사업장 수(단위: 개소)	노동자 수(단위:명)
계	3,186,968	21,879,639
수도권 지역	1,599,334	11,701,436
부산·경남지역	444,728	3,006,467
대구·경북지역	294,161	1,856,087
대전·충남지역	249,572	1,762,762
충북·강원지역	216,332	1,336,484
광주·전남지역	206,634	1,280,577
전북 지역	96,014	559,347
기타 지역	80,193	376,479

[최근 3년간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2022. - 2024.11.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지역 구분	사고 재해자 수(단위:명)	사고 사망자 수(단위:명)
계	326,414	2,434
수도권 지역	150,879	1,063
부산·경남지역	51,803	377
대구·경북지역	29,048	237
대전·충남지역	26,123	208
충북·강원지역	23,777	221
광주·전남지역	19,239	176
전북 지역	10,215	98
기타 지역	15,330	54

②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선업도 경남권 소재 사업장과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전국의 73.8%, 와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③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조선업 사고사망자 36명 중 72.2%인 26명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이 지역의 산재예방교육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볼 수 있음.

[조선업 사고사망자 발생현황(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 고용노동부)

구분	합계	부산	울산	경남	전남	경북
계	36	6	2	18	10	0
2022년	13	2	1	7	3	0
2023년	9	2	0	3	4	0
2024년	14	2	1	8	3	0

신규 부지 매입 문제 또한 현 부지가 ①2022년 실시한 정밀안전 점검 결과 건축물 주변의 지반 침하 등 중대한 결함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②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이하(1,669㎡) 적용대상으로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연면적 확보가 불가능하며, ③농경지와 인접하여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배수로 정비를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음.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교육의 효과면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장 및 근로자 분포와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 재건립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노동부가 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경남안전체험교육장 재건립 계획액의 일부만이라도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재건립절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용역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필요 〉

또 다른 내역사업인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용역에 2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제출된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는 용역의 필요성이나 용역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음.

구체적인 용역 내용 제출을 요청한 결과, 고용노동부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도별 제조업 및 건설업 노동자 수, 산업재해 발생 건 수 및 형태 등 체험교육 건립 기반 자료 조사나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수 및 외국인근로자 재해 현황 조사,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현황과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 지역 및 확충 방안 등을 제출함.

그런데 시·도별 제조업 및 건설업 노동자 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및 형태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수 등은 고용노동 통계조사와 산업재해 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고,¹⁷²⁾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현황과¹⁷³⁾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¹⁷⁴⁾ 등은 2023년에 실시된 노후 안전체험교육장(경남)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이며,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 지역 조사는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된 경남과 충남의 안전체험교육장의 재건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¹⁷⁵⁾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는 연구용역비는 원칙적으로 행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

172) 매년 고용노동부 정책지원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 통계조사(p.11 참고자료 참조)를 통하여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노동자 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조사와 산업재해 보상보험 지급 과정에서 산업재해 및 재해자(외국인근로자 포함) 관련 정보를 생산,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에서 고용허가제 관련 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173) 「노후 안전체험교육장(경남)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p.76~102

174) 「노후 안전체험교육장(경남)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p.119~140

175) 표 [전국 안전체험교육장 현황] 참조

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내역사업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은 ①고용노동부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에 관한 것으로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고, ②그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③용역 결과가 2023년에 노후 안전체험교육장(경남)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의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전문적이고 유의미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하기보다 형식적인 용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용역 실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시 규모와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